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 五

信用狀去來에 따른 銀行의 運送書類
受理基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inciple of Bank's Documents
Inspection in Transaction with Documentary Credits



1995年2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企 業 管 理 專 攻

金 聖 吉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 五

信用狀去來에 따른 銀行의 運送書類
受理基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inciple of Bank's Documents
Inspection in Transaction with Documentary Credit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1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企 業 管 理 專 攻

金 聖 吉

金聖吉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12月 日

審查 委員長

姜錫中



審查 委員

劉丙鎬



審查 委員

權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3
第 2 章 信用狀去來에서의 運送書類	5
第1節 賣買契約과 代金決濟	5
1. 貿易去來와 代金決濟	5
2. 代金の 推尋	6
第2節 貿易決濟와 信用狀의 特性	8
1. 貿易去來와 信用狀去來	8
2. 信用狀과 擔保力	9
第3節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12
1. 運送書類의 提供	12
2. 運送書類의 範圍	13
第 3 章 銀行의 運送書類에 대한 受理點檢基準과 要件	15
第1節 銀行의 書類點檢 義務와 審査	15
1. 銀行의 書類點檢 義務의 範圍	15
2. 書類審査 期間	16
3. 書類審査의 非指定	17

4. 銀行手數料의 負擔	18
5. 銀行間의 補償協定	20
第2節 銀行의 書類點檢 基準	21
1. 信用狀統一規則上의 銀行의 義務	21
2. 信用狀條件의 點檢義務	23
3. 文言의 嚴格化	24
4. 文面上의 形式 點檢義務	26
第3節 運送書類의 一致性	27
1. 運送書類의 受理要件	27
2. 運送書類의 有效期間 遵守與否	28
3. 書類의 常態性 具備	29
4. 書類의 一致性 限界	31
第4節 船積書類의 受理可能要件	32
1. 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	32
2. 保險書類의 認定	50
3. 商業送狀의 許容	52
4. 其他書類의 受理	54
第 4 章 銀行의 免責과 貿易業者의 對應策	55
第1節 銀行의 免責事由와 書類具備의 完全	55
1. 書類에 대한 銀行의 免責事由	55
2. 書類自體에 관한 免責	56
3. 書類의 一般 特殊事項에 대한 免責	58
4. 商品의 實質狀態에 관한 免責	59
5. 書類作成者 및 發行者에 대한 免責	60
6. 書類具備의 完全性	61

第2節 瑕疵있는 書類와 貿易業者의 瑕疵處理	63
1. 瑕疵있는 書類	63
2. 瑕疵의 發生原因	65
3. 書類의 瑕疵 發生 原因	66
4. 瑕疵에 대한 貿易業者의 處理方法	67
第3節 書類一致의 限界性과 處理	69
1. 書類不一致 判定基準	69
2. 書類一致의 限界性	72
3. 不一致書類의 處理	76
第 5 章 結 論	78
ABSTRACT	82
參考文獻	87

- 圖目次 -

<圖 2-1>	送金 및 推尋決濟方法의 問題點	7
<圖 2-2>	運送書類에 條項	14

第 1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의 世界貿易去來는 通信 및 運送手段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증대되고, 상품유통이 활발해져 무역거래의 중심이 되는 信用狀의 사용이 날로 증가해 가는 경향이 있다. 信用狀에 의한 이러한 무역거래는 거래목적물인 상품의 운송을 설명하는 物權證書로서의 運送書類를 비롯한 제반서류의 은행에 대한 지시를 전제로 무역거래의 최종 목적인 代金決濟가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상품의 내용과 運送條件 및 支給條件을 信用狀의 文面に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인도를 최소한 서류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수출업자는 運送書類를 비롯한 모든 서류의 인도여하에 따라 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에 대한 대금회수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언어·관습·법률·경제제도 등이 상이한 각국의 무역업자간에 이루어지고 契約의 成立地, 履行地 및 代金支給地가 다르므로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익자나 指定銀行이 發行銀行에 송부한 서류가 信用狀조건과 하자가 있을 경우, 發行銀行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지급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發行依頼人에게 조회하여 그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만일 發行銀行이 임의로 하자있는 서류를 수리한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우려 서류를 심사하지 않고서 하자있는 서류에 대해 지급을 하였다면 發行依頼人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그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의 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히 發行銀行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發行依頼人은 사전에 發行銀行에다 信用狀金額에 해당하는 자금을 미리 예치하여 놓

았다면 그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發行銀行은 서류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부담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貿易去來의 완결시점인 서류제시에 의한 대금결제에 있어서 信用狀조건과 運送書類間的 不一致에서 오는 분쟁의 소지가 크게 대두된다. 따라서 運送書類는 서류계약과 信用狀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정비되어야 하며 運送書類의 조건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신용장에 관한 統一規則 및 慣例, 이하 UCP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信用狀去來에서 發行銀行은 信用狀條件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賣渡人과 買受人 양자의 매매계약에서 발행하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信用狀거래상의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가 信用狀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은행에 있어서 지급의무의 전제가 되고 있다. 信用狀去來는 서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서류가 信用狀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은 서류상 미세하거나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하여 信用狀조건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류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第5次 UCP에서의 은행의 運送書類 受理基準에 대해 해상運送書類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銀行의 書類 點檢基準과 이로 통한 銀行의 免責條項을 보면서 貿易業者의 對應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信用狀거래에 따른 은행의 수리여건에 따라 수리하였을 경우 각 運送書類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運送書類에 受理可能與否를 파악하여 무역업자들이 信用狀去來를 통해 원활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그 研究目的을 두고 있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信用狀에 의한 國際貿易去來에서의 대금결제는 信用狀條件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공을 전제로 한 貨換의 체결에 의하여 완결되며, 이 貨換체결의 담보이자 무역거래의 목적물을 상징하는 運送書類의 수리는 대부분 UCP에 근거한 信用狀조건해석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UCP의 서류규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 수리되는 서류는 그것이 信用狀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여야 함은 물론 이들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이 一貫性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제출되는 서류가 문면상 信用狀의 條件에 一致하는가를 심사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受益者의 입장에서 볼 때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不一致한 書類와 償還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은행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지급한 대금의 償還請求權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상업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은행의 運送書類에 대한 點檢基準과 要件을 파악하고 銀行의 免責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貿易業者의 對應策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本 論文에서는 第2章에서 信用狀去來에서의 運送書類를 賣買契約과 대금결제와 관련한 信用狀去來의 사항을 理論적으로 考察하고 第3章에서는 은행의 運送書類에 대한 수리점검기준과 요건을 제5차 UCP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銀行의 免責事由를 서류를 중심으로 살펴 무역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第5章에서는 本 論文의 結論을 도출하고 提言을 하였다.

그리고 研究方法은 UCP의 運送書類, 은행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근간으로 각종 국내외의 서적과 연구논문, 정기간행물을 참고로 하여 文獻調査를 중심으로 한 敘述的 方法을 취하였다.

第 2 章 信用狀去來에서의 運送書類

第1節 賣買契約과 代金決濟

1. 貿易去來와 代金決濟

貿易去來는 법률, 관습, 통화, 정책, 언어 등을 달리하는 隔地國家間的 거래인 만큼 통상 장기간의 다양한 운송 등으로 인한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해당상품도 貿易競爭속에 價格變動의 위험이 있다. 또한 양 거래의 담당자는 상대방의 信用과 상대방의 시황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이 자국내에 있어서와 같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통화에 있어서도 양거래담당자는 換率變動의 위험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대금의 결제를 받는가에 따라 위험부담의 차이에 따른 이해대립의 문제도 발생된다.

원래 貿易去來는 國際去來慣習에 근거하여 隔地間的 賣買契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동 物品賣買契約의 법적 성격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며 계약의 성립에 따라 쌍방이 債務를 부담하며, 賣渡人의 물품인도에 대해 買受人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¹⁾. 現代 契約法上에는 계약은 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상호간 의사일치만으로도 성립하는 不要式契約이라고 할 수 있으나 契約內容에 관한 오해를 피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契約事項을 명확히 기록하여 당사자가 署名, 確認한 契約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²⁾

貿易去來의 一般協定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대

1) 梁暎煥·吳元奭, 貿易商務論, 法文社, 1994, p.161.

2) 李時煥, 新貿易實務講義, 新陽社, 1994, p.47.

금결제방법이 무역거래의 핵심이 된다. 代金決済方法은 무역거래에서나 국내거래에서를 불문하고 賣渡人측은 판매한 상품의 대금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반하여 賣渡人측은 대금결제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소극적이며 될 수 있는 한 늦게 또는 가능하다면 분할지급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대금결제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매매당사자가 깊이 研究·檢討하여 협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國際去來에 있어서 代金決済方法, 즉 支給期間, 支給方法, 支給地 및 支給通貨에 관하여는 어디까지나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결정될 문제이며, 결제방법 여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호대립되므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³⁾

2. 代金の推尋

國際貿易去來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방법으로는 先支給, 同時支給, 書類償還支給, 推尋決済方式 즉 支給引渡條件 및 引受引渡條件, 貨換어음, 信用狀에 의한 결제 등이 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어느 결제방법에서나 일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신용상태 불확실성 때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선택하게 된다⁴⁾.

먼저 送金 및 推尋決済方法에 따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94, pp. 52-53.

4) 朴大衡, 信用狀, 法文社, 1994, pp. 4-6.

<圖2-1>

送金 및 推尋決濟方法의 問題點

決濟方法	當事者 種 類	賣渡人 (Seller)	買受人 (Buyer)
事前送金決濟方法 (Advance Remittance)	단순송금 방 식	유 리	경우에 따라 대금철회와 상품인도 불능
事後送金決濟方法 (Later Remittance)	COD CAD	대리인들의 신용에 따라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불능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유 리
推尋決濟方法 (Collection)	D/P D/A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 안됨	유 리

자료: 홍종덕, "信用狀 去來時 Unpaid의 豫防과 解決策(上)," 「仲裁」 제197호, 대한상사중재원, 1988, pp.8-9.

송금 및 추심 결제방법에서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매매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화 시킬 수 있는 결제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貨換어음에 의한 결제방법이 이용된다. 이것은 賣渡人이 계약상품의 선적완료 후 즉시 賣渡人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의 담보로서 船荷證券,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그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할인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貨換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위험부담을 균형화 시키는 것이다. 즉 賣渡人의 입장에서는 선적완료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현금상환지급과 비슷하게 결제할 수 있고 買受人의 입장에서 後支給의 경우보다도 못하지만 계약상품이 실제로 선적되고 그 船積貨物을 證券化한 運送書類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商品과 償還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지급에 대한 불안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先支給이 경우와 같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지만 과연 계약대로 선적될 것인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된다⁵⁾. 따라서 賣渡人의 입장에서 現品償還支給에 가깝게 거래할 수 있어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위험부담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대금결제 대부분은 이 貨換어음에 의하고 있다.

第2節 貿易決濟와 信用狀의 特性

1. 貿易去來와 信用狀 去來

貿易去來는 賣買契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곧 信用狀이다. 그러나 일단 信用狀이 개설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信用狀은 그 자체로서 어떤 獨立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독립성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信用狀의 당사자가 되어 信用狀 去來의 한계 내에서 독특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信用狀 자체는 어떤 특정한 매매계약에 의해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信用狀이 개설되면 信用狀 生成원인이 된 어떤 계약에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되며 信用狀去來에서 야기된 어떤 문제에도 매매계약 내용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는 것이다⁶⁾.

또한 信用狀去來는 書類去來이지 商品去來가 아니다. 즉 信用狀 거래의 목적은

5) 姜元辰, 信用狀論, 博英社, 1994, pp. 22-23.

6) 金容福, 信用狀論, 博英社, 1994, p. 17.

상품이 아니고 서류에 있다. 그러므로 信用狀 거래에서는 상품이 서류보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도 그 상품을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은 용납도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류의 인수와 대금결제가 끝난 후 상품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信用狀은 상품의 실질상태나 그 매매계약으로 부터 독립하여 추상화되어 있어 이를 信用狀의 獨立抽象性이라 하며 이 독립추상성이 信用狀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⁷⁾.

2. 信用狀과 擔保力

國際貿易去來에 따르는 대금의 결제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賣渡人이 買受人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여기에 담보물로서 화물을 증권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서 어음의 할인형식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買受人은 동 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貨換制度는 국제무역인 교역기능에 외국 환은행의 금융기능을 합쳐서 이용시켜 거래상품을 외국지급어음의 담보로 하여 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종합시킨 것으로 국제금융의 지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⁸⁾.

따라서 國際貨換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賣渡人은 계약상품의 선적과 동시에 貨換어음의 취결로 銀行으로부터 발행된 어음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한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송금해 받는 방법에 비해 훨씬 빨리 금융의 편익을 받을 수 있어⁹⁾ 賣渡人은 화물의 선적과 동시에 동 화물을 증권화하여 그것을 담보로 화물을 취결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와 같은 貨換制度는 주로 상

7) 上掲書, p.18.

8) 上掲書, p.7.

9) 上掲書, 同面.

품의 인수·인도와 代金收受와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균형화한 것이지만 계약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貨換制度에 의해서 買受人의 대금회수가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貨換어음이 運送證券인 船荷證券이나 貨物相換證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運送證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안전하지 않은 데다가 또 그것을 換價하여도 상품의 시세 등의 변동 때문에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환어음에 상품이 담보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며 또 처분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혹은 처분할 수 없을 수도 있어 賣渡人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해도 추심 어음으로 취급하여 어음금액은 어음이 결제되고 나서 지급되므로 賣渡人으로서의 금융상 곤란을 받게 된다.¹⁰⁾

따라서 隔地間 國際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의 貨換어음의 할인에 의하여 대금회수를 하는 경우에 運送證券의 擔保力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담보에 추가해서 어음결제의 불편이나 불안을 제거하고 國際貨換의 運用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이 높은 자가 賣渡人의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보증해 준다면 賣渡人에게도 유리하고 할인하는 은행도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보증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가장 공신력이 큰 은행인 바 이 은행의 보증이 信用狀이다. 信用狀이라 함은 買受人 즉 信用狀發行依頼人의 거래은행이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買受人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賣渡人 즉 수익자 또는 그의 지시 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아래 運送書類를 담보로 하여 買受人·信用狀發行銀行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체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며 이와 같

10) 上掲書, p.10.

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¹¹⁾

따라서 信用狀에 의거하여 발행된 貨換어음은 買受人이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더라도 信用狀의 發行銀行이 책임을 지고 지급해주므로 매입은행은 賣渡人이 발행한 貨換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게 된다. 信用狀부 化환어음의 경우는 어음의 발행인인 賣渡人이 상품의 선적후 환어음과 선적서류에 信用狀을 첨부하여 賣渡人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수출대금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¹²⁾

이상과 같이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貨換어음의 취결 信用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信用狀 發行銀行은 賣渡人 또는 그 시행보조자인 어음할인은행으로부터 信用狀의 運送書類를 비롯한 부속서류의 제공과 상환으로 信用狀 發行銀行을 지급인으로한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이때에 매매상품의 소유권이 買受人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信用狀 發行銀行이 運送證券의 引渡를 받게 되는데 이는 發行銀行이 발행 의뢰인인 買受人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상품권에 담보권을 갖게 되며 信用狀발행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이 發行銀行에 대한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運送證券을 포함한 附屬證券의 引渡에 관한 행위는 할인은행이 賣渡人의 이행보조자로서 행하는 것이며 또 信用狀 發行契約에 의거하여 買受人의 수입자로서 행하는 發行銀行이 동 運送證券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賣渡人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發行銀行이 행하는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과 동일한 행위를

11) 李勝榮, 信用狀論, 法文社, 1994, p.584. :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신용장의 정의에서의 신용장의 범주는 “화환신용장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되므로 신용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가 제시될 때 은행이 이에 대해 지급한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12) 朴大衛, 前掲書, p.4 참조.

하는 것이다. 즉 發行銀行이 어음의 지급을 한때에는 賣渡人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發行銀行이 어음의 지급을 한때에는 賣渡人은 이것으로써 어음의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전액은 확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되므로 賣渡人의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¹³⁾

信用狀의 本質은 發行銀行의 현금지급약속 또는 환어음의 인수지급 약속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있는 은행을 賣渡人의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하면 사실상 발행인인 賣渡人이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에 있어서는 어음의 지급인인 發行銀行이 貨換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 할인은행으로부터 發行銀行에 부속증권이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며 信用狀去來가 發行銀行의 信用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법률관계인 이상 이 시점에 매도상품의 소유권이 買受人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¹⁴⁾.

第3節 信用狀去來와 運送書類

1. 運送書類의 提供

信用狀에 의한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去來方式은 물품의 현실적 인도를 조건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현실인도에 의하지 않고, 契約物品을 物權的 有價證券으로 化體시켜 所有權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運送書類와 償還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서류제공에 의한 象徴的 引渡 또는 推定的 引渡方式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賣渡人이 물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경우에도 서류의 제공이 없는 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買受人은 물품이

13) 上揭書, p.40 .

14) 梁暎煥, 吳元爽, 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4, p. 240.

도착하기 전이라도 서류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信用狀去來는 물품의 매매라기 보다는 서류의 매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信用狀去來에서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代金支給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賣渡人과 買受人 양자에게 運送書類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매입은행으로 볼 때에는 信用狀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고 발행은행에 의해 거절당하면, 마땅히 賣渡人에게 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음채권의 담보로서 서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2. 運送書類의 範圍

運送書類¹⁵⁾란 국제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물품의 선적, 발송 또는 수탁에 관한 증명서류이나 광의로 해석하여 信用狀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의미한다. 이들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중심을 이루는 것임과 동시에 信用狀去來 그 자체가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UCP 400은 信用狀이 海上船荷證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26조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관한 은행의 수리요건 및 거절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信用狀이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0조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受理要件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信用狀에서 海上船荷證

15) 李勝榮, 前掲書, p.208: UCP상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란 명칭은 1974년 제3차 UCP에서는 제3장 1(C.1)에서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r Dispatch or Taking in Charge(Shipping Documents)라 하여 선적, 발송 또는 화물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즉 선적서류라고 규정하였고, 1983년 제4차 UCP에서는 제4장 1(D.1)에서 Transport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Loading on Board or Dispatch or Taking in Charge)라 하여 본선적재 또는 발송 또는 화물인수를 표시한 운송서류라고 하였으며, 1993년 제5차 UCP에서는 단순히 諸書類(Documents)로 명명하고 해상, 우편 및 기타 운송서류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다.

券과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 이외의 運送書類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運送書類 一般)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수리 및 거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 500에 있어서는 제23조 海上船荷證券, 제24조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 제25조 備船契約船荷證券, 제26조 複合運送書類, 제27조 航空運送書類, 제28조 道路, 鐵道 또는 內陸水路 運送書類, 제29조 特送配達人과 郵便受取證, 제29조 特送配達人과 郵便受取證, 제30조 運送仲介人이 발행한 運送書類로 구분하여 은행이 수리가능한 서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특히 이번 UCP 500에서 두드러진 것은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도로, 철도 및 내륙수로운송서류, 운송중개인 발행의 운송서류에 대한 규정을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상 설명한 사항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참조.

<圖 2-2> 運送書類에 條項

UCP 400	UCP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 해상선하증권 -제30조 우편수취증, 우편증명서 -제25조 기타運送書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運送書類 · 항공화물운송장 · 해상화물운송장 · 철도화물상환증 · 트럭화물상환증 · 내륙수로선하증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3조 해상선하증권 -제24조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 용선계약선하증권 -제26조 복합運送書類 -제27조 항공運送書類 -제28조 도로, 철도, 내륙수로 運送書類 -제29조 특송배달인 및 우편수증 -제30조 운송중개인 발행의 運送書類

資料: 尹錫亨, 信用狀統一規則 第5次改正案 主內容, 銀行界, 1993.

16) 崔鳳赫 編著, 信用狀 統一 規則, 國際貿易研究院, 1993, pp.16-17.

第 3 章 銀行의 運送書類에 대한 受理 點檢基準과 要件

第1節 銀行의 書類點檢 義務와 審査

1. 銀行의 書類點檢 義務의 範圍

오늘날 信用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貨換信用狀을 말하며 信用狀은 문면상에 명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發行銀行의 約定이므로 계약상품의 운송을 증명하는 제반서류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익자의 입장에서 볼 때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은행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지급한 대금의 상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상업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모든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信用狀條件과 文面上으로 嚴密히 一致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일치여부에 관한 결정은 문면상 나타난 서류자체의 심사로 충분한 것이며 실질적인 검사까지를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發行된 信用狀의 諸條件과 不一致하여 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상호불신이 쌓이게 되어 법적 분쟁까지도 이르게 되고 상호간의 신용을 근거로 개설된 信用狀은 수출입 당사자간의 원활한 대금결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심사의 일반원칙과 信用狀 條件의 해석기준

을 세워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信用狀去來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書類審査 期間

UCP 500에서는 發行銀行의 서류심사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의문점이 많았으며 각 국가에 따라 그 적용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¹⁷⁾ 美國의 경우 미국통일 상법전에서는 서류의 점검기간에 대하여 發行銀行은 서류를 접수 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종료시 까지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 점검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제시자 즉 수익자 또는 지급, 인수, 매입은행 및 확인은행의 합의를 얻어 점검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로 하여 기간의 탄력성을 배려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의 해석에 대한 판례는 최근 Bank of Cochine¹⁸⁾ 사건 및 Rabo Bank¹⁹⁾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두 판례와 최근에 행하여진 조사연구를 종합할 때, 發行銀行은 서류인도 여부의 결정을 5 내지 6 영업일수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서류의 제시상황, 서류의 과다여부, 또는 재무보증과 관련된 원금이나 이자의 채무에 대한 계산이 단순한가의 여부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황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서류수령일로부터 제7은행 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17) Schmitthoff C.M., *Schmitthoff's Export Trade*, Steven & Sons 7th ed.1980, p.412 : 예컨대 영국의 은행관습에서는 서류를 검사하는 상당한 기간이 라고하면 서류접수후 5-6일 또는 8일까지 보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긴 기간까지 허용되고 있다.

18) 이봉조, Bank of Cochin v. Manufactures Honover Trust Co., 612F. Supp.1533(S. D. N. Y. 1985), aff'd, 808f.2d 209(2d Cir.1986), "Development in the letter of credit law with regard to the examination and rejection of documents by banks",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협회 제15권, 1990, pp.437-450.

19) 이봉조, *op. cit.*, pp.437-450 : Co-operative Centrale Raiffeisen-Boerenleen-Bank B. A. v. the Sumitomo Bank Ltd.(1987) 1 Lloyd's Rep.342.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각각 7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행이 7일까지 서류를 심사한다는 것은 해당서류의 심사를 7일간 지속하거나 서류심사 개시이전 6일째까지 특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란 서류의 제시, 종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위 7일 기간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시기를 제한함에 따라 서류의 송부은행이 개시일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각종 상황에 따라 소요일수가 다양할 것이므로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판례조항의 설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書類審査의 非指定

수입업자는 상품을 수입하여 전매에 이르기까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출업자에게 요구한 바 이러한 서류들은 통상 信用狀에 명시되어 수출업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信用狀上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고 조건만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정규칙에서는 이를 무시하도록 신설하고 있다.²⁰⁾

信用狀의 發行이나 信用狀 그 자체, 變更에 관한 모든 지시 및 변경사유 자체에는 제출되어야 할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을 명시하고 서류의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은 信用狀의 추상성에 정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信用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運送書類가 없는 경우, 일정한 상품의 선적, 선박의 출항, 규정된 품질의 일치, 수입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 계약위반 여부 등을 모른 채, 은행에서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관행

20) UCP 500 제13조 c항.

이 조성될 것임이 틀림없다. 서류없는 방식의 조건만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信用狀에 이들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구나 만기일이나 서류의 제시는 첨가서류 없이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조건이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condition”²¹⁾과 “terms”²²⁾를 혼동하는 데에 그 주장의 오류가 발견된다.

한편 서류없는 방식의 조건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이들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이다. 말하자면 은행이 서류없는 방식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충분히 간주되는 서류를 응낙하도록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든지 또는 이 같은 방식의 조건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느냐이다. 이번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후자를 택하였다. 왜냐하면 후자의 방법은 재협상으로 단순화 할 수 있고 업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각국 사법부의 경향이라든가 유럽대륙에서는 發行銀行으로 하여금 發行依頼人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信用狀상의 명세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정규칙에서는 信用狀의 發行依頼人이나 發行銀行은 반드시 접수할 서류를 언급한 후 그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²³⁾

4. 銀行手數料의 負擔

發行銀行이 信用狀이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타 은행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결과에 관련없이 그에 관한 모든 비

21) condition이란 장래에 발생하여야 할 불확실한 조건을 의미. 따라서 신용장상에 서류 문면에 관하여 기재된 조건은 장차 서류를 제시할 때 지켜야 할 condition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서류의 지정없이 조건만을 명시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22) term이란 현재로부터 확실하게 발생하여야 할 조건을 의미. 따라서 신용장의 개설일과 유효기일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현재로부터 확실하게 발생하는 term에 해당.

23) ICC Document. 470/587, Publication. 434 R.102 (1884-1986)

용이 궁극적으로 發行依頼人이 부담하여야 한다.²⁴⁾ 왜냐하면 發行銀行은 發行依頼人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저지른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發行依頼人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행 규칙은 이러한 비용과 관련하여 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은행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은행의 면책사항만 기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은행이 發行依頼人의 지시를 이행할 의도로 다른 은행의 서비스 이용시 당연히 그 의뢰인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행한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 대리인의 개입하는 경우 비용부담의 책임한계가 논란이 된다. 따라서 개정규칙에서는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당사자는 그 지시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당사자에 의해 발생된 수수료, 요금, 경비 또는 비용을 포함하는 어떠한 금액도 책임을 지도록 신설하고 있다.²⁵⁾

본 조항에서는 은행의 서비스에 관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대하여 指示한 當事者と 指示받은 當事者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지시 받은 당사자로 행동하지만 信用狀 去來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는 것은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 당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는 이러한 비은행 당사자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정을 두어 그동안 信用狀 去來에 참여하는 모든 지시자와 피지시자에 대해서도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소되었다.

또한 信用狀에 있어 지시받은 당사자의 모든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당사자가 경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시한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모든 이 모든 경비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져야

24) UCP 400 제20조 a항 : UCP 500 제18조 a항

25) UCP 500 제18조 c항 1호

한다.²⁶⁾ 따라서 信用狀上에 제시한 당사자의 의무는 부차적이라고 규정하였더라도, 그 지시한 당사자는 지시받은 당사자의 경비에 대하여 궁극적인 보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익자의 환어음 상으로 지급은행이나 지시 받은 당사자의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 信用狀의 發行銀行이나 지시한 당사자는 이러한 경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銀行間의 補償協定

發行銀行은 支給, 引受 또는 買入銀行에 대한 상환이 보상은행에 의해 청구은행의 청구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지시 또는 권한을 제때에 제공해야 함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發行銀行은 청구은행에게 보상은행과 일치하는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²⁷⁾ 그러한 증명서에 대한 지시가 주어지면, 이 같은 지시를 무시하도록 신설하고 있다.

또한 補償銀行의 費用面에서 보면 보상비용이 비용인지, 은행이 수익자에게 청구해야 할 비용 즉 통상 發行銀行 또는 發行依頼人の 지급인지 은행업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改正規則에서는 發行銀行이 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 비용이 다른 당사자의 비용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發行銀行은 原信用狀 및 補償授權書에 보상은행의 경비를 수익자와 같은 제3당사자의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상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인 청구은행이 信用狀에 따라 환어음을 제시해 올 때 이러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發行銀行의 제시에 따르는 보상은행의 경비에 대한 징수방법과 최종적인 책임문제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에서는 보상은행의 경

26) UCP 500 제18조 c항 2호

27) UCP 500 제19조 b항

비에 대한 부담을 원초적으로 發行銀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상경비는 수익자나 청구은행과 같은 기타 당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信用狀을 개설할 때 보상은행의 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수익자의 환어음이 충분하게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은행은 수익자의 환어음으로는 보상경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發行銀行이 이러한 경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第2節 銀行의 書類點檢 基準

1. 信用狀統一規則上的 銀行의 義務

UCP상 은행의 서류점검에 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는 UCP 500 제13조에 은행은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에 따라 상당한 수준을 다하여 서류가 문면상 信用狀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銀行에서 受理되는 書類는 그것이 信用狀의 條件과 文面上 一致하여야 함은 물론 이들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이 一貫性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제출되는 서류가 문면상 信用狀의 조건에 일치하는가를 심사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익자의 입장에서 볼 때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은행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지급한 대금의 상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상업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조항에서의 信用狀去來에 一致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紙面上의 一致性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자유재량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嚴密一致의 原則이 적용될 뿐이다.

서류의 검사에는 법적 요건의 구비 또는 유효성 등에 관하여 그 심사의 책임에 한계가 있으나, 은행은 관례적으로 당연히 성실한 주의를 요하는 다음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첫째, 書類의 有效期間,

둘째, 제시된 서류와 文面上의 信用狀條件과의 一致性 與否,

셋째, 어음금액 송장금액 信用狀金額間的 모순성 여부,

넷째, 상품의 단가, 명세 및 수량 등의 기재사실,

다섯째, 보험서류의 경우 그 종류와 담보의 범위,

여섯째, 船荷證券 등의 運送書類의 일부 사고여부 배서 운임지급여부 분할선적 및 환적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

일곱째, 각종 서류 상호간의 모순성 여부 기타서류의 문면상에 나타나 있는 서류의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의 누락여부, 또는 권리양도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²⁸⁾

서류간에 문면상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는 조건의 불일치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은행은 문면상의 모순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書類의 點檢은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신중히 행할 필요가 있고 은행은 그것에 상응한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는 외관상 문면상의 문언과 서류의 완전한 합치를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

28) Ventrie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0) p.20.

2. 信用狀條件의 點檢義務

信用狀에 근거한 대금의 지급·인도 또는 매입을 위해서 첫째, 信用狀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의 제시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信用狀의 조건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 그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信用狀條件을 당연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의무를 지는 것은 첫째로 發行銀行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익자 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어음 혹은 서류의 소지인이다. 發行銀行과 賣渡人사이의 법률관계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가장 중요하고 근거가 되는 것은 信用狀上에 명시되어 있는 문언이다. 賣渡人의 은행에 대한 대금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우선, 그 전제로서 信用狀에 규정한 조건을 엄격히 이행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信用狀에 정한 조건은 그 문언을 정당하게 해석함으로써 명확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信用狀文言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受益者는 發行銀行과의 信用狀條件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信用狀에 의거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는 信用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음의 발행인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거절한 때는 어음발행인은 그 은행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²⁹⁾ 즉 UCP상의 서류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條件不一致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信用狀에 의한 대금의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는 그 조건준수의무로서 각

29) Gutteridge H.C.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p.84.

서류마다 여러가지 信用狀條件에 따라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제공하는 서류간에 모순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發行銀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이 수권 되어져 있는 중개 은행이 이 의무를 부담한다. 發行銀行과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대리관계 즉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發行銀行은 이러한 것들이 은행에 대해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信用狀條件에 合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대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³⁰⁾.

銀行은 買受人의 제시에 합치하는 증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買受人의 입장에서 보면 商業信用狀은 은행을 매개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買受人으로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의 지시와 일치하는 증권을 입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증권의 점검의무는 買受人의 保護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銀行의 書類點檢義務는 買受人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賣渡人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상호간에 문면상 모순이 있는 경우는 서류불일치로 되기 때문에 은행은 각 서류를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각 서류의 기재문언을 문면상 비교 검토하고 서류간의 문면상 모순의 확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文言의 嚴格化

銀行이 受益者로부터 제시받은 서류를 信用狀條件의 一致與否를 점검할 경우 지급·인도·매입은행 및 發行銀行은 그 문언상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행은 買受人이 한 제시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은행의 독자

30) 金容福, 信用狀論, p. 202.

의 판결을 가지고 지시를 위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은행은 물품거래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신용을 가지고 買受人의 이익에 합치하려고 한 행위가 반드시 진실로 買受人의 이익에 합치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독자의 판단에 따른 사무를 집행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發行依頼人の 지시가 너무 지나치게 세밀할 때는 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방해할 우려가 있고 信用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發行銀行은 이러한 發行依頼人の 의도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시문언에 대한 해석이 엄격화는 또한 수익자의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행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고 수익자가 信用狀조건을 엄수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를 가진다. 은행은 수익자가 信用狀上에 부여된 권한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중요한 사항에 있어 그것에 따르지 않는 한 信用狀의 支給·引受를 강요할 수는 없다.³¹⁾ 어떤 수익자에게 信用狀條件을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또한 지급·인수·매입은행에서 지급·인수 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信用狀條件의 해석은 엄격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서류가 완전히 문면상 일치하고 있는지를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점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信用狀條件의 문언해석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과 동일하며 문언의 진의를 공평 정직하게 해석한다. 해석상 당사자 일방이 요구하는 데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UCP의 규정 조문자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ICC위원회는 이것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

31) Gutteridge, H. C. and Maurice Megrah, *op. cit.*, p. 88.

다.³²⁾

信用狀文言의 해석에 관한 원칙을 설명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CP의 해석규정을 준수할 것,

둘째,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信用狀거래관행을 적용할 것,

셋째, 문언의 해석은 어음문언의 해석과 같이 객관적으로 행하도록 할 것,

넷째, CIF계약의 해석원칙의 준용이 가능할 것³³⁾

4. 文面上의 形式 點檢義務

信用狀去來에 있어서는 은행에 엄격한 점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그것은 문면상의 형식조사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질조사, 예를 들면, 증권의 유효성이라든가 상품의 실체라든가 혹은 신용 상태등의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의 형식상 조사라고 해도 이것에는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書類의 信用狀 條件一致를 문면만에 의해 대조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류자체의 형식상 규정성 즉 형식상 법적 요건의 구비를 검토하는 것이다.

UCP는 信用狀去來의 관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信用狀條件一致의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행은 수 많은 信用狀조건의 조사를 엄밀히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게다가 각 증권의 법적 형식을 자세하게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다. 또한 취급하는 증권은 단지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발행되어진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증권에 대해서 각국의 법률에 관한 지식을 가질 것을 은행에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서류의 발행자와 작성자의

32) Barnard S. Whebal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OC (1989) pp. 46-49.

33) 노현수, 신용장거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0, pp. 42-45.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서명이 있는가 어떤가 또는 통상 동종의 거래에 이용되는 것과 같은 형식 즉 정규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점등을 외관상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이다.

第3節 運送書類의 一致性

1. 運送書類의 受理要件

오늘날 國際間 貿易去來에서 상품의 수출입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날로 다양해짐에 따라 운송에 필수적인 運送書類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UCP 400이 개정될 때, 船積書類를 運送書類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³⁴⁾ 은행이 수리하는 運送書類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되는 듯 했다. 그러나 UCP 500은 1974년의 제3차 개정 때보다 수리하는 서류의 범위면에서 오히려 크게 후퇴하였다.³⁵⁾

UCP 500은 信用狀이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26조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은행의 수리요건 및 거절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信用狀이 우편수령증 또는 우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30조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信用狀에서 해상선하증권과 우편수령증 또는 우편증명서 이외의 運送書類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 運送書類 일반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수리 및 거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4) UCP 400에서는 선적서류를 운송서류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선박에 의한 운송이 아니고 육·해·공의 복합운송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5) 曹秉仲,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리되는 운송서류의 요건에 관한 고찰,” 「중재」 (1993년 9월호) : 제3차개정 UCP 제24조에는 은행이 수리하는 기타 선적서류로서 railway bill of lading을 비롯한 12가지를 약정하고 있다.

信用狀去來에서 수익자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가 수리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판단기준은 UCP가 아니라 信用狀 본문의 지시내용이다. 따라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信用狀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다만, 信用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불명확한 사항의 경우에는 UCP를 근거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만일 UCP와 信用狀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信用狀 본문이 우선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UCP를 참조하여, 보편타당하게 해석하여야 한다³⁶⁾.

한편, UCP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은행은 信用狀去來慣行을 충분히 참고하고 해석을 객관적으로 하며, 그 다음 서류거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CIF 매매의 해석원칙을 참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信用狀上에 UCP 적용문언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관행으로 되고 있다. 이 문헌 자체가 信用狀條件이라고 해석되어 信用狀거래담당자는 이것에 의해 구속되게 마련이어서, 은행은 UCP의 해석규정에 따라 信用狀條件을 해석하여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조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규칙의 취급규정에 따라 제시된 서류인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運送書類의 有效期間 遵守與否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에 명시된 선적일자 이내에 선적하지 못하거나 또는 信用狀유효기일이내에 運送書類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運送書類는 信用狀 조건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수리가 거절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규칙에서는 모든 信用狀은 支給,引受 또는 買入의 대상자인 運送書類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의 종

36) 梁暎煥 外 2人, 前掲書, p. 256.

료일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부가하여 運送書類를 요구하는 모든 信用狀은 運送書類의 발행일자로부터 서류제시를 하여야 할 특정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고, 만일 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은행은 運送書類의 발행일자 이후 21일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서류를 Stale B/L로 간주하고, 별도의 受權을 표시하지 않은 한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³⁷⁾.

따라서 輸出業者는 信用狀에서 명시하는 선적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해야 함은 물론이고, 信用狀條件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를 반드시 信用狀에서 명시하는 기일 이내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는 수입자가 물품의 도착이전에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의 상업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물품이 도착하였음에도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물품인수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3. 書類의 常態性 具備

運送書類의 統一과 관련하여, 國際規則은 이들 서류가 어떤 형태·형식을 갖추어 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그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일정사항만을 열거하고 있고 있을 뿐이어서, 오늘날과 같이 복사기술이 발달한 시점에서는 운송인의 양식을 쉽게 복사 또는 위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사고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運送書類의 常態性을 구비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運送人의 名稱에 대한 表示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信用狀인 경우는 증권상 기재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것만이 수리가 가능하다³⁸⁾. 따라서 선하증권이

37) 姜元辰, 前掲書, p.137.

38) UCP 500 제23조 a항

운송인에 의해 발행한 것임을 증명할 근거로서 증권면에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선하증권에 운송인명칭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그 증권발행당사자 또는 증권상의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위조·변조등의 위험도 가중될 것이다.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명칭표시는 대개 인쇄나 스탬프로 하지만 비록 이러한 인쇄나 스탬프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운송인 명칭이 선하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³⁹⁾.

名稱과 관련 船荷證券은 상품을 대표하는 有價證券이며, 이의 인도가 물품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物權的 效力을 갖는 引渡證券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에 책임 있는 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진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신용통일규칙에는 서명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서류가 발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일임하는데 동의하면서 信用狀거래에 제시되는 서류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행된 때에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서류에도 署名捺印이 없으면 참고자료 정도로 간주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그 진위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UCP 이외의 국제조약이나 국내법 등에서 이러한 서류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서명을 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통일규칙의 규정과는 별도로 서명은 서류의 필수적 기재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서류에 기재된 서명권자의 서명을 은행 또는 送荷人이 일일이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船荷證券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유

39) UCP 500 제23조 b항

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4. 書類의 一致性 限界

UCP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信用狀에 의한 거래는 상품을 증명하는 서류상의 거래이며 관련 상품의 실질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⁰⁾ 따라서 은행은 무역계약이나 상품의 실질 상태와는 관계없이 信用狀條件과 제시된 書類의 文面上의 一致與否에만 국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信用狀 본질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銀行의 書類對照는 發行依頼人の 保護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發行依頼人の 지시에 합치되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행할 수 있다.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지시된 서류를 信用狀條件과 대조·점검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즉 銀行은 買受人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買受人의 指示를 遵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信用狀 조건의 해석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서류가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가를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여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⁴¹⁾.

銀行에서 受理되는 書類는 그것이 信用狀 條件과 一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서류 상호간에 모순없이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信用狀 조건과 일치하는가와 상태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한 후에는 이들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를 심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⁴²⁾.

여기서 書類의 信用狀 條件과의 一致性이라든지 相互間의 一致라는 말은 그

40) 대한상사중재원, 신용장 거래시 UNPAID의 예방과 해결책, 1991, pp.10-12.

41) 金容福, 信用狀論, p.114.

42) 上掲書, 同面.

내용상의 일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文面上의 一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서류가 내용상 信用狀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문면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가 거절되며, 만일 문면상 일치하는 경우에도 서류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信用狀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리거절된다.

그러나 통일규칙에서는 '서류상호간의 일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은행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다만, 각 서류가 문면상 다른 서류와 관계(연계)가 있다는 것과 모든 서류가 상호불일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서류의 불일치는 각각 서류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서류 상호간의 내용의 불일치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예로 數量·單價·金額이 換어음이나 상업송장, 서류증권의 표기가 상이한 경우 서류불일치에 속하게 되고 클레임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은행은 우선 각각의 서류가 信用狀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여부를 따져보고, 다시 서류상호간에 상이한 점이 없는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第4節 船積書類의 受理可能要件

1. 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

(1) 海上船荷證券의 受理

① 受理可能한 書類條件

해상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운송하여 揚陸港에서 증권의 정

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有價證券이다. 유엔 海上物品運送에 관한約定(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에서는 이에 관하여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운송인은 그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물품을 지정된 사람의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서류상의 규정은 그러한 약정을 성립한다.⁴³⁾

UCP 400과 UCP 500은 해상선하증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첫째, UCP 400 제26조 a항 수리가능 선하증권과 b항 거절하지 않는 선하증권 및 c항 수리거절 선하증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은 수리가능 선하증권만을 규정하여 이에 규정되지 않는 기타 선하증권은 수리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둘째, UCP 400은 서류 이면상 기재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은 서류이면상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여 기재된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기재된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하였거나 확인된 것이 나타내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격을 선장 또는 그 대리인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UCP 400의 제26조 b항 iii호에 따르면 해상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지정된 선적항과 양륙항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信用狀에 규정된 선적항과 양륙항이 기재되지 않는 한 그 제시된 선하증권을 수리거절하여야

43) 유엔해상물품운송에 관한 협약 제1조 7항

한다. 즉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만을 및/ 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목적지 만을 명시하거나 예정된 선적항 또는 예정된 양륙항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信用狀에 규정된 선적항과 양륙항이 기재되지 않는 한 그 제시된 선하증권을 수리거절하여야 한다.

넷째, UCP 500은 선하증권의 발행부수에 관하여 단일의 원본선하증권,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된 全通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여 은행에서 信用狀을 발행할 때 요구로서 全通船荷證券은 물론 獨立船荷證券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회사로 하여금 하나의 원본으로 구성되는 선하증권이 발행을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ICC가 信用狀 거래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관계당사자들을 계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하나의 원본으로 구성되는 선하증권의 발행 및 이용은 사기사건의 발행율이 감소 및 다른 원본서류의 오용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換積에 관하여 UCP 400은 제29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은 운송형태별 각 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⁴⁴⁾ 왜냐하면 환적은 각 운송방법에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운송형태가 관계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상선하증권이 수리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인의 명의로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둘째, 물품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명시한 서류,

셋째, 선적항과 수탁지 및/ 또는 양륙항과 최종 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지정된

44) UCP 500 제23조 c항 d항, 제24조 b항 c항 d항, 제26조 b항, 제27조 b항 c항, 제28조 c항, d항

선적항과 양륙항을 명시하면서 “예정된”선적항이나 양륙항을 명시한 경우에도, 信用狀상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륙항을 명시한 서류,

넷째, 단일의 원본이나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全通으로 구성된 서류,

다섯째, 운송에 관한 이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여섯째, 용선계약 또는 帆船만에 의한 운송이라는 어떠한 명시도 없는 서류,

일곱째, 기타 信用狀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② 換積조항의 해석

해상운송에 있어서 換積이란 信用狀에 규정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揚荷하여 再積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信用狀에 換積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이 “換積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信用狀에 換積이 금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선하증권상에서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LASH 船⁴⁶⁾ 등에 선적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換積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물론 지정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全海洋運送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상에 커버되어야 한다.⁴⁷⁾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은 “운송인이 선적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 있는 선하증권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⁴⁸⁾

信用狀이 運送書類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을 명

45) UCP 500 제23조 b항

46) LASH란 lighter aboard ship의 약자이며, 화물을 실은 거룻배(barge: 항만내부나 비교적 짧은 거리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소형선)를 그대로 선적하는 특수구조의 화물선, 거룻배 채로 실는다는 점에서 unit load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룻배는 임해의 주변지역이나 내륙수로의 오지까지 예인 항해 할 수 있고, 컨테이너처럼 전용부두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岸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구가 혼잡하더라도 적당한 수심에서 船積할 수 있다.

47) UCP 500 제23조 c항

48) UCP 500 제23조 d항

시하고 있을 때 수리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그 증권의 문면상 지정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운송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 통 이상의 원본이 발급된 경우 全通의 原本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타 信用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해상선하증권은 UCP 500 제23조항에 의하여 자동수리 된다.

③ 指定된 運送人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

信用狀이 運送書類로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의 발행자를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며 이는 순수한 운송주선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선하증권의 문면상 발행인이 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은 제시된 선하증권이 지정운송인 또는 운송인으로 행동하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되었는가의 여부를 서류의 문면상 표시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指定運送人이란 船荷證券上에 기재된 이름의 발송인을 말하는 것으로 運送書類는 반드시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信用狀 開設申請書 또는 信用狀에 運送人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운송인에 대한 통일규칙상의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Incoterms 1990에는 運送人이란 육로, 철도, 해상 또는 복합방식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그 명의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ICC 은행분과회의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운송을 수행하고 목적지에서 積送品을 인도하기로 서약한 경우 그는 운송인이다. 그러한 사람은 선박소유주 또는 운송화물의 취급인 또는 여하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 운송인의 범위는 실제운송인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책임지는 주체로 볼 수 있으나 문면

상 운송인을 판단하는 명시적 기준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④ 指定船舶에 船積⁴⁹⁾

信用狀에서 海上船荷證券을 요구하는 경우에 受理되는 船荷證券은 지정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이 적재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지정선박에 화물이 선적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선하증권의 문면상 선적, 적재의 표시를 의미하는데, 이의 설명방법은 첫째 지정된 선박의 본선적재 또는 지정된 선박의 선적을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運送書類에 의하여, 둘째 수취를 표시하고 있는 運送書類인 경우에는 정식서명 또는 약식서명 되고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일자가 기입된 運送書類상의 本船積載附記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⑤ 發行된 證券原本全通 提示⁵⁰⁾

선하증권의 발행통수에 대하여 信用狀의 문면에서는 全通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꼭 몇통이 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례는 UCP의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 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 送荷人 앞으로 발행된 전통의 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확히 몇 통의 서류이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ull set이라고만 표시할 경우에는 거래상대국의 관습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信用狀發行依頼人은 선하증권 원본을 한 통 또는 그 이상을 원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사본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船荷證券의 발행통수는 국내외법규에 의하여 法定記載事項으로 규정되어

49) UCP 500 제23조 a항 2호

50) UCP 500 제23조 a항 4호

있으므로 각 운송인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선하증권상에는 원본 발행 통수란 이 있어서 그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信用狀의 수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運送書類의 문면상에 명기된 발행통수 만큼의 원본복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대개 선하증권의 원본을 2통 이상의 複本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이유는 취급중의 분실에 대비하거나 취급상의 편의를 도모한다는데 있다. 또한 複本全通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복본중에서 어느 한 통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경우에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發行銀行은 여신상으로 동 선하증권 또는 관계화물의 담보하에 채권보전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그중 한 통이라도 다른사람이 수중에 들어가면 채권보전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선하증권의 전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 複本の 원본들은 각각 동일한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만일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그 복본중의 어느 한 통만을 제시하여 해당물품을 인도받게 되면 나머지 원본들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즉 복수로 발행된 원본들은 각각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최초로 제시되는 원본 한 통만으로도 물품은 인도되므로 안전수단으로써 원본전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⑥ 其他 信用狀條件과 一致된 書類

선하증권의 수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信用狀에 명시된 모든 기타 조건에 문면상 일치되어야 한다. 信用狀 조건에 일치한다는 의미는 내용상 일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문면상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제시되는 선하증권은 문면상 기타 서류와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信用狀條件의 기타 명시사항에 대한 銀行의 受理審査는 주로 船荷證券의 法的要件具備 또는 有效性 등에 있으므로 문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의 요건구비가 요구된다. 즉 표시서류의 유효기한, 日附, 사고여부, 배경, 운송운임지급조건, 분할선적, 換積 등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가 그것이다. 그 외에 信用狀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조건의 일치성은 최우선적으로 信用狀상의 문면상 요구조건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며 信用狀거래에서 發行依頼人의 필요한 사항은 모두 信用狀상에 삽입시킬 수 없으므로 信用狀의 본문에 지시하지 않는 내용이나 또는 본문만으로도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UCP을 준용하면 된다.

(2) 受理되는 船荷證券

① 複合運送과 관련된 運送書類⁵¹⁾

信用狀에 별도의 반대표시가 없는 한 기본요건을 전부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중에서 複合運送書類와 관련된 과제와 그 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있는 運送書類, 略式船荷證券, 船積·受託地가 상이하거나 또는 揚陸·目的地가 相異한 선하증권 또는 단일화물임을 표시하는 선하증권은 수리거절되지 않는다.

信用狀에서 전통적인 해양선하증권 또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複合運送書類證券, 複合運送書類, 複合運送 또는 항구간 선하증권 등의 표제를 갖는 서류를 은행이 거절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국제운송에서 복합운송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빈번한 마찰과 분쟁을 야기시켰으며 ICC의 견해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51) UCP 500 제26조 a항

② 略式 또는 白紙背書 船荷證券⁵²⁾

약식 선하증권은 운송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해 선하증권 자체 이외의 서류나 기타의 근거에 의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⁵³⁾ 따라서 文面上에 운송요건중에서 일부를 생략하고 필수사항만을 발췌한 선하증권이며 표준 선하증권과 다른점은 운송인의 면책약정 등 상세한 운송요건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표준 선하증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문언 즉 積貨에 관한 조건의 전문이 운송계약에 관하여 적용되고 일반조건은 선적항이나 발송항에서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표준 선하증권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약식 선하증권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는 운송인이 상품의 소유주나 화주에게 간소한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성질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선하증권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略式船荷證券은 표준양식의 선하증권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약식 선하증권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대되었고 UCP에서도 제3차 개정부터 수리가능한 선하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船積·受託地 相異 또는 揚陸·目的地가 相異한 船荷證券

信用狀에서 해상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를 표시하고 있거나 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는 선하증권은 수리 거절되지 않는다.

(3)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 ⁵⁴⁾

52) UCP 500 제23조 a항 5호

53) Walker, A.G., *Export Practice and Documentation* 2nd ed, Nawnes Betterworths, 1977, p.80.

54) UCP 500 제24조

海上貨物運送狀이란 送貨人과 해상운송인 사이의 海上貨物運送契約을 證明하고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貨物受領證으로써 이미 설명한 해상선하증권과는 달리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성이 없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해상운송장상에 지정된 수화인으로서 확인된다면 해상운송장이 제시없이도 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준다. 국제 선박 회의소에서도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하여 해상 물품운송 계약과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접수 또는 적재를 증명하는 非流通書類(證券)이며 물품을 서류상에 지정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비유통서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국의 실정법상 권리증권도 아니고 심지어 물품에 대한 수령증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INCOTERMS 1990에서는 해상운송을 전제한 CFR 또는 CIF계약에 있어서 賣渡人의 인도의 증거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海上運送狀은 관습상으로 이미 물품 수령증으로 정착되어 있다. 다만 이 해상화물운송장은 계약품을 커버하고 선적기일내의 일자를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買受人이 목적항에서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국제협상이나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국내법에서는 아직 비유통운송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90년 6월 ICC의 國際海事委員會에서는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관한 법률상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CMI의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을 삽입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UCP 400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하여 독립된 규정없이 UCP 500 제

25조의 運送書類 일반규정에서 수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오늘날 運送産業의 변혁과 운송량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運送書類를 수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독립된 조항을 신설하고, 수리가능한 서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서 기술한 해상선하증권 조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非流通 海上貨物 運送狀에서 말하는 換積이란 信用狀에서 규정된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揚荷하여 再積하는 것을 의미한다.

信用狀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이 환적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信用狀에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서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라쉬船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하는 한, 환적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물론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全海洋運送이 하나의 동일한 非流通 海上貨物運送狀上에 커버되어야 한다.

(4) 傭船運送 船荷證券⁵⁵⁾

傭船契約이란 해상운송인인 船舶所有者 또는 船舶賃借人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傭船者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운송계약의 일종이며 이러한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용선운송 선하증권이라 한다.

傭船運送 船荷證券은 용선계약에 따라서 발행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傭船契約을 수용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상에 기재해야 한다.

55) UCP 500 제25조

傭船運送 船荷證券에 관하여 UCP 400은 제26조 c항에서 信用狀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용선계약을 조건으로 한다는 표시가 있는 서류는 거절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은 용선운송 선하증권에 관하여 독립조항을 신설하고 수리가능한 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傭船契約에 따른다고 명시한 서류,

둘째, 선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타 인증된 서류,

셋째, 운송인의 명의를 있거나 또는 없는 서류,

넷째,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다섯째, 지정된 선적항과 양륙항을 명시한 서류,

여섯째, 단일의 원본이나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全通으로 구성된 서류,

일곱째, 帆船만에 의한 운송의 어떠한 명시도 없는 서류,

여덟째, 기타 信用狀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용선운송 선하증권은 앞서 기술한 해상선하증권 등과 달리 운송인의 명의를 있거나 또는 없는 서류도 은행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ICC 은행위원회에 대한 다음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은행위원회의 회신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Sucden회사와 외국무역은행(the bank for foreign trade of the USSR)이 용선운송 선하증권상에 포함된 선적서류를 런던의 어느은행에 매입을 위해 제시하였는데 제26조 a항 i호에 의거하여 문제의 은행은 운송인이 명의를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선하증권이 제26조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서류의 매입을 거절하였다.⁵⁶⁾ 이에 수리성 여부를 ICC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은행위원회는 용선계약서류에 운송인

56) ICC, Document 470/487 and addendum: 470/495 Bis Meeting on 28 Oct. 1986.

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있음을 인정한다. 信用狀에서 용선운송 선하증권이 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용선계약에 운송인의 명의를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명의를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를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⁵⁷⁾

(5) 複合運送書類⁵⁸⁾

복합운송이란 운송물의 수령장소로부터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선박, 항공기, 철도 등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複合運送書類(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또는 證券이란 이러한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복합운송인의 발행하는 서류 또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를 말한다.

複合運送書類에 관하여 UCP 400은 제26조 해상선하증권과 제25조 運送書類一般에서 각각 複合運送船荷證券, 複合運送書類, 複合運送船荷證券 또는 港口間 船荷證券과 같은 명칭, 또는 이들과 유사한 의도와 효력의 명칭이나 명칭들의 결합의 지니는 運送書類는 거절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에서는 UCP 400의 제23조 港口間海上船荷證券과 구분하여 複合運送書類를 하나의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수리가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信用狀에서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포괄하는 複合運送書類가 요구되는 경우 은행은 信用狀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명칭에 관계없이 서류상에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명이 명시되어 있고,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운송인, 복합운송인의 지정인 또는 선장 또는 선장의 지정 대리인이 서명 또는 진본임이 확인된 서

57)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p.36-38.: ICC Publication No. 434, Sept. 1987, pp.36-38.

58) UCP 500 제25조.

류와 물품의 발송, 수탁 또는 적재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는 수리한다.

그리고 적재항구, 공항 또는 장소가 信用狀상에 약정된 수탁장소와 다르고 또한 양육지가 信用狀상에 약정된 최종목적지와 다르게 표시된 것 및 선박, 선적항, 양륙항과 관련하여 intend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수리한다.

또한 運送書類의 原本이 한통으로 구성 되었거나 한통 이상의 복본으로 발행된 경우, 전통의 것, 그리고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합운송서류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나타나 있는 경우 銀行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으며,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나 운송선박이 범선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 그리고 기타 信用狀에 약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수리한다.

마지막으로 信用狀에 換積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銀行은 全運送過程이 동일 및 단일 복합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되는 경우 환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질 것 이라는 표시가 있는 複合運送書類는 수리한다.⁵⁹⁾

(6) 航空運送書類⁶⁰⁾

航空運送書類(Air Transport Document)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즉 항공화물운송 총 대리점업자와 대리점업자 및 항공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운하인과 항공운송인사이에 항공화물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운송인이 운하인 으로부터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것과 해운조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은 航空貨物運送狀에 대하여 UCP 400은 단순히 제25조의 運送書類 일 반항목에서 규정 수용하고 있으나 UCP 500은 航空運送書類를 하나의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고 은행이 수리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UCP 500 27조에서 구체적으

59) UCP 500 제26조

60) UCP 500 제27조

로 규정하고 있다.

즉 信用狀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信用狀에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운송서류상에 운송인명이 표시되어 있고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의 지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진본임을 확인한 경우 운송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는 것, 信用狀에서 실제의 발송일자를 요구하고 있고 발송일자는 명백한 부기조항으로 표시하도록 된 경우 항공운송서류상에 표시된 발송일자는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또한 信用狀에 약정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이 명시된 것과 信用狀에서 원본전통 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송하인, 발송인용 원본임을 나타내는 것과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나타나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으며, 기타 信用狀에 약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수리한다.

(7) 道路,鐵道 또는 內水路 運送書類⁶¹⁾

대륙내 또는 하천을 끼고 있는 인접 국가간에는 도로나 철도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방식을 이용하게되는 경우에 고려하여 UCP 500은 이에 부응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運送書類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다.

運送書類상에 운송인명이 나타나 있으며 운송인 또는 지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또는 진본임을 확인한 것 또는 운송인이나 지정대리인에 의해 수취소인 또는 다른 수취표시가 있는 것은 수리하고, 운송인의 서명, 진본 확인, 수취소인 또는 기타의 표시는 문면상 운송인의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

61) UCP 500 제28조

거나 또는 진본임을 확인한 경우, 대리인의 본인인 운송인의 명칭 및 자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품의 선적, 발송, 운송을 위하여 수취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용어가 표시된 것. 운송서류에 수취소인이 찍혀있지 않는 한, 서류 발행일자는 선적일자로 간주하며, 수취소인이 찍혀있는 경우 수취소인의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또한 信用狀에 약정된 선적지 및 목적지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기타 信用狀에 약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명칭에 관계없이 수리한다.

또한 본 조항에서 換積이란 信用狀에 약정된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도중에 여러 운송방식의 한가지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양육과 재적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信用狀에서 換積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전 운송 과정이 동일 운송수단내에서 동일 및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포괄되는 경우,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에 환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8) 配達 및 郵便受取證⁶²⁾

특히 배달업자⁶³⁾에 의한 배달증명서는 UCP 400에서는 언급이 없던 運送書類인데 UCP 500에서는 이를 신설하여 運送書類 규정을 두고 있다.

信用狀에 물품이 선적 또는 발송 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상에 소인된 것 또는 달리 인증된 것과 발송일자가 기재된 것. 그러한 표시일자는 선적일자 또는

62) UCP 500 제29조

63) Courier Service는 상업서류운송과 중량 45Kg이하의 상품전본, 선물 등 소형 경량물품 운송을 door to (desk to desk) 서비스로 웬만한 국가는 2-3일이내에 긴급배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07년 설립된 미국 최대의 UPS(United Parcel Service)와 1960년 설립된 DHL(Dalsey Hillbom 및 Lind의 3인변호사의 머리글자 약어)등이 있다.

발송일자로 간주하고, 기타 信用狀에 약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信用狀에서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명서가 요구하는 경우,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수리한다.

그리고 서류상에 특사배달인, 서비스업자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지정된 특사배달인, 서비스업자가 소인, 서명 또는 달리 인증한 서류와 수집일자, 수취일자, 또는 그러한 취지의 용어가 표시된 것, 그러한 일자는 선적일자 또는 발송일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타 信用狀에 약정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信用狀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써 특사배달인 또는 급송배달서비스업자가 발행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은행은 명칭에 관계없이 서류를 수리한다.

(9) 運送周旋人の 運送書類⁶⁴⁾

UCP 400에서는 운송인 또는 지정운송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발행되어졌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발행된 서류를 거절한다고 표시하고 있었는데, UCP 500은 信用狀에 별도 인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주선인에 의하여 발행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運送人 또는 複合運送人으로서의 運送周旋人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된 것 또는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지정대리인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은 信用狀에서 달리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주선인의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64) UCP 500 제30조

(10) 甲板積, 貨主計量, 送荷人の姓名⁶⁵⁾

UCP 500에서는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은행의 수리해야 할 서류는 海上運送될 경우 또는 해상운송을 포함한 한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될 경우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가 없는 서류. 은행은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거나 적재될 것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될지도 모른다는 조항이 포함된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그리고 문면상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信用狀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물품의 송하인으로 표시된 것도 수리한다.

(11) 無故障 運送書類⁶⁶⁾

무고장 운송서류란 물품 및/또는 포장의 상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명백히 표시된 구절 또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운송서류를 말하며, 은행은 그러한 구절이나 단서조항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信用狀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절이나 단서조항이 포함된 운송서류는 거절한다. 그러나 信用狀에서 運送書類가 clean on board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운송서류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은행은 동 조건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運賃 先支給 運送書類⁶⁷⁾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또는 信用狀에 의거하여 제시한 어떠한 서

65) UCP 500 제31조

66) UCP 500 제32조

67) UCP 500 제33조

류와도 모순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임 또는 운송비가 앞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또한 運送書類에 운임이 지급되었거나, 先支給되었음을 표시하도록 信用狀에 약정된 경우, 은행은 서류상에 소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의 지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서류상에 다른 방법으로 운임의 지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信用狀에서 특사배달료가 지급 또는 선지급되도록 요구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특사배달인 또는 급송배달인의 발행한 운송서류에 특사배달료는 수하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그러나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 또는 이와 유사한 뜻의 용어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운임이 지급된 증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은행은 적재, 양육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불금 등과 같이 운임에 추가되는 비용에 관한 참고표시가 소인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되어있는 운송서류는, 信用狀에서 그러한 참고표시를 명백히 금지않는 한 수리한다.

2. 保險書類의 認定

保險書類는 문면상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서류가 한통 이상의 원본을 발행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 信用狀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원본 모두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信用狀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보험업자가 발행한 부보각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信用狀에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보험증명서 또는 예정보험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미리 서명한 확정통지서는 수리한다.

信用狀에서 명백히 예정보험에 의거한 보험증명서 또는 확정통지서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동 서류 대신에 보험증권은 수리할 수 있다. 또한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또는 보험서류상에 담보가최소한 물품의 적재일, 발송일 또는 수탁일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에 표시된 적재일, 발송일 또는 수탁일보다 늦게 발행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보험서류는 信用狀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보험서류상에 표시되어야 하는 최저부보금액은 CIF 또는 CIP가격이 서류상의 문면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금액 CIF 가격 또는 CIP 가격에 경우에 따라서는 10%를 가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信用狀에 의거 지급, 인수, 매입되는 금액의 110% 또는 송장금액 총액의 110% 가운데 큰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수리한다.⁶⁸⁾

信用狀에는 요구되는 보험의 종류와, 필요한 경우 담보되는 부가위험을 약정하여야 한다. usual risk 또는 customary risk 등과 같은 불명확한 조건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사용된 경우, 은행은 어떤 위험이 담보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없이 보험서류를 제시하는 대로 수리한다. 또한 信用狀에 특별히 약정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어떤 위험이 담보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책임없이 보험서류는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그리고 信用狀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은행은 담보가 소손해 면책을 또는 초과율을 조건으로 하도록 기재된 보험서류는 수리한다.⁶⁹⁾

UCP 500에서는 信用狀에 insurance against all risk를 약정하고 있는 경우, 은

68) UCP 500 제34조

69) UCP 500 제35조

행은 보험서류에 특정위험이 제외된다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 서류에 all risk 라는 단어나 구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all risk라는 제목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어떤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에 대한 책임이 없이 보험서류를 수리한다.⁷⁰⁾

3. 商業送狀의 許容

상업송장은 信用狀에 명시된 제1수익자가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UCP 500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信用狀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UCP 500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상업송장은 제1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조항이다. 商業送狀이라 함은 물품명세서이자 가격계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信用狀이 양도되는 경우로써 제1수익자가 송장대체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수익자의 송장이 제시된다. 이 경우에는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商業送狀은 發行依頼人の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업송장이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인 개설신청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설신청인이 물품을 전매하기 위하여 매입을 예약한 자신의 고객명의로 상업송장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信用狀에 그러한 명시가 있으면 개설신청인명 대신에 제3자의 명의로 발행될 수 있다.

UCP 500에서 상업송장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은 서류의 발행 뿐 아니라 발송까지도 컴퓨터, 전자방식 또는 기타의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최근의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銀行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信用狀금액을 초과하는 상업송장은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지정은행이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이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분은

70) UCP 500 제36조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액초과 송장을 수리하는 경우 동 은행의 결정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UCP 500 제37조항에서 信用狀金額에 about, circa 등과 같은 표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제39조 a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信用狀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초과된 송장은 수리된다.

때에 따라서는 제39조 a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송장이 금액이 信用狀金額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信用狀金額의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초과송장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든 관계자를 구속한다. 예를 든다면 선적시 매매대금의 90%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물품의 양육지에서 검사한 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최초의 지급금액이 信用狀金額과 동일한 경우 송장금액은 10%를 초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商業送狀은 물품 명세서이므로 약정품의 명칭이나 상태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재되는 물품의 명세는 信用狀의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서류에 명시되는 물품의 명세는 信用狀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용어로 표현하면 된다. 물품의 명세란 상품의 명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당사자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업송장의 명세 즉, 물품의 기술, 가격, 포장, 수량 등은 信用狀의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서류 즉, 운송서류,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은 信用狀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비록 信用狀상에 명시된 물품의 명세가 너무 간단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상업송장에는 信用狀의 명세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수익자가 이에 추가하여 물품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겠다.⁷¹⁾

4. 其他書類의 受理

해상운송이 아닌 기타의 운송방법에 의해 운송이 되는 경우, 信用狀에서 중량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서류가 아닌 별도의 중량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중량신고 또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고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는 중량증명서로 수리한다.

본 조항에는 해상운송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선적할 때에는 세관 및 검수인의 검수를 받기 때문에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공인된 중량이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재만으로 중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량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⁷²⁾

71) UCP 500 제37조

72) UCP 500 제38조

第 4 章 銀行의 免責과 貿易業者의 對應策

第1節 銀行의 免責事由와 書類具備의 完全

1. 書類에 대한 銀行의 免責事由

UCP 500 제15조에는 일반적으로 信用狀 去來의 모든 銀行은 信用狀이 개설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支給, 引受 또는 買入이 이행되기까지 각종 서류의 효력, 송달 중의 사고, 불가항력 그리고 타 은행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점검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사항을 서류자체, 서류의 제조조건, 서류의 기재사항 그리고 서류작성자의 행위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免責을 信用狀 發行依頼人은 이미 信用狀去來約定書에서 동의하고 있다.

첫째, 은행은 서류자체에 관하여 모든 書類의 形式, 充分性, 正確性, 眞正性, 虛偽性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둘째, 서류에 열거되거나 첨가된 일반 또는 특수조건에 대해서도 은행은 면책이 된다. 은행은 선하증권 등 제반서류의 인쇄된 모든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법적 효과를 信用狀 內容과 對照할 필요가 없다.

셋째, 銀行은 書類의 記載事項, 즉 서류상의 상품의 명세, 수량, 품질상태, 포장 뿐만 아니라 인도가격 또는 그 실존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지 의약품이나 불량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信用狀에 의해 지급이 중지되지 아니한다.

넷째, 銀行은 書類作成者의 行爲에 관하여, 즉 상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

인, 수하인, 보험자 또는 기차 모든 관계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나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성 또는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信用狀去來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은행은 이들과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은행으로서는 信用狀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 받으면 족하지 그들의 배경까지 검토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요약하면 은행은 당해 서류가 법적인 필요기재 사항을 실제 갖추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사하지 않아도 좋으며, 외형상 식별할 수 없는 위조나 변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번 개정에서 하단 끝부분에 물품과 관련된 當事者에 대한 免責事項을 열거하였는데, 특히 물품의 운송에 관련되는 운송주선 인과 수하인을 추가하였다.⁷³⁾

2. 書類自體에 관한 免責

(1) 形式性

銀行은 제시된 서류가 一般的인 形式을 具備하고 있는지 또는 發行依頼人의 요구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뿐이며, 그 서류가 과연 법률상 완전히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⁷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서류점검에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의무는 없고 일단 서류의 상태성이 외관상 확인된 것이라면 법적 요건이 不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73) UCP 500 제15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서류심사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사항

74)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62, p. 753.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⁵⁾.

(2) 充分性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發行依頼人の 要求事項에 充分히 満足되는가의 여부를 書類의 充分性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세관 송장, 영사송장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信用狀條件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은행에 제시된 서류에 동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해도 은행은 서류의 충분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信用狀에 요구하지 않은 꼭 필요한 서류를 충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은행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또한 信用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발행 의뢰인이 기대한 만큼 충분하지 않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⁷⁶⁾.

(3) 正確性

信用狀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서류자체나 서류상의 기재내용 또는 계산이 부정확 하더라도 은행은 하등의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UCP에도 은행은 모든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서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正確性이란 買受人의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買受人의 기대 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책이외에도 계산의 정확성, 즉 상업송장의 단가, 수량, 금액 등이 信用狀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 정확한가를 검토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⁷⁷⁾.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작성한 개인적인 계산과

75) 金容福, 前掲書, pp.118-119 ; UCP 500 제13조.

76) 上掲書, p.119:UCP 500 제13조

77) 上掲書, p.120:UCP 500 제13조

상업 송장면에 기재된 세부항목을 검토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명백한 상업송장상 계산착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ICC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4) 眞正性

서류가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偽造, 變造 또는 虛偽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성에 관해서 은행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익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을 때 그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이 사실을 發行銀行이 지급이전에 찾아내면 지급거절 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이 위조 또는 변조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發行銀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매입은행이 위조사실을 모르고 환어음을 매입한 경우 發行銀行은 동 어음을 지급거절 할 수 없다⁷⁸⁾.

信用狀去來는 書類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買入銀行은 書類가 文面上으로 信用狀條件과 一致하는가를 審査하면 되고, 비록 매입은행은 취득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는 정상소지인임을 입증하는 한 發行銀行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3. 書類의 一般 및 特殊事項에 대한 免責

銀行은 船荷證券이나 運送關係書類 등에 몇개의 조항으로 인쇄되어 있거나 스탬프로 찍혀 있거나 또는 부전 등에 부기된 일반 및 특수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로 부담하지 않는다. 一般條件이란 일정한 서류에 공통적으로 기재

78) UCP 500 제13조

되는 약관을 말하며, 特殊條件은 개개의 서류에 다르게 기재된 특별약관같은 유형에 부기되어 있는 일반 및 특수조항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에 따라서는 이를 인쇄 또는 스탬프 등에 의하여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문상 and/or로서 부가조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가조항이라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과 마찬가지로 일반조건의 표면에 다시 부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무사고선하증권으로서 문제가 되나 UCP에 의하여 은행은 일단 면책의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선하증권, 화물수취증, 창고증권, 보험증권 중에 통상약관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약관의 내용을 은행에서 일일이 음미하여 그것이 發行依頼人이 지시한 취지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은행은 가령 이러한 보통약관 중에서 개설 의뢰인의 취지에 반하는 문언이 있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⁷⁹⁾. 따라서 은행은 모든 서류상의 모든 서류에 대하여 일일이 검토하며 그 법적효과를 信用狀의 내용과 대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銀行은 書類上에 나타난 契約上の 當事者が 아니므로 서류상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4. 商品의 實質狀態에 관한 免責

銀行은 書類上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의 명칭, 수량, 중량, 품질 및 포장상태 등이 證券上の 記載內容과 一致하고 있는지 또는 상품이 틀림없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는가 하는 등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상품이 서류에 표시된대로 가격이 것인지 혹은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79) UCP 500 제15조

조사할 의무도 없다⁸⁰⁾. 그 이유는 서류작성시 세세히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서류를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5. 書類作成者 및 發行者에 대한 免責

銀行은 商品買受人인 信用狀 發行依頼人の 결제사무를 취급하는데 불과하므로, 商品の 운송인, 보험인,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성실성, 작위와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등의 보장의무는 지지 않는다.

(1) 誠實性

수출업자인 送荷人에 대한 성실성이 信用狀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信用狀 條件上의 商品을 船積하지 않는다든지 送荷人の 詐欺的인 行爲로 인하여 買受人의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信用狀에 의거 발행된 환어음을 은행에 제공하였을 경우 은행은 수출업자의 부성실한 행위로 인한 買受人의 피해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사항에 관한 불성실한 것의 판단여부는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그 책임은 買受人의 輸出業者에게 있으며 은행은 그 책임이 없다⁸¹⁾.

(2) 作爲, 不作爲

信用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賣渡人이 제3자에게 선적을 시켰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不可抗力의 이유로 인하여 운송인이 지정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에 당해 화물을 인도한다든가, 운송중의

80) UCP 500 제13조

81) 金容福, 前掲書, p.120.

화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가 하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무관계한 일이라 할 수 있다⁸²⁾.

(3) 支給能力, 履行能力 또는 信用狀態

선적화물이 운송중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은행은 면책된다. 또한 선적화물에 대하여 유명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附保를 했다는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이 화물선적을 적재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보험회사나 운송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없다⁸³⁾.

따라서 지급 및 이행능력 부족, 신용상태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 은행은 면책되고 관계 당사자중 賣渡人인 수출업자와 買受人인 수입업자가 상호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무역거래에서 은행의 역할은 信用狀 거래상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금 결제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상품 거래를 원활히 하는데 있다.

6. 書類具備의 完全性

무엇보다는 信用狀에 따른 제서류는 반드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유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信用狀에 의한 書類는 文面上으로 정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지정된 서류는 각각 그 동종의 서류가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諸書類의 文面要件을 보면 信用狀에 따른 제서류는 문면상 信用狀과 일치한 物品明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信用狀에 따른 제서류는 문면상으로 중량 및 수량

82) 上掲書, 同面.

83) UCP 500 제13조

의 표기를 잘못된 경우에 이는 불일치한 지시로 본다⁸⁴⁾. 즉 信用狀에서 중량증명서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한 상업송장 또는 運送書類상에 중량을 附記하여도 이는 정당한 지시로 본다. 또한 信用狀에 따른 제서류는 문면상 信用狀금액과 일치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초과한 환어음 또는 지급청구서는 불일치한 지시로 본다. 아울러 換어음이나 支給請求書上の 통화단위는 信用狀의 통화단위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換率의 變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諸書類의 指示要件은 첫째, 모든 信用狀은 반드시 서류의 지시에 의한 有效期間을 明示하여야 하며, 그 기한과 불일치한 서류의 지시는 거절의 사유가 된다. 만약 信用狀에서 서류의 지시를 위한 유효기간이 누락된 경우에는 信用狀은 그 개설일로부터 선적기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⁸⁵⁾. 둘째, 信用狀에 지정된 서류는 全種類의 全通이 지시되어야 한다. 즉 數通의 원본이 발행된 때에는 그 數通의 원본으로 구성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⁸⁶⁾.

제서류의 심사문제는 실제로 서류를 접수한 당사자는 信用狀에서 요구하는 運送書類, 保險書類, 商業送狀 등의 船積書類가 각각 지정된 요건과 관습적인 요건을 갖추어 제시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첫째, 運送書類 특히 선하증권은 문면상으로 信用狀의 제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CIF계약에서 요하는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요건도 모두 갖추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信用狀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험서류는 반드시 信用狀의 제조건과 엄격히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서류는 CIF계약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관습적인 요건도 갖추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84) UCP 500 제14조

85) UCP 500 제22조

86) UCP 500 제37조

셋째, 상업송장은 賣渡人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뜻으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선적서류이다.

第2節 瑕疵있는 書類와 貿易業者의 瑕疵處理

1. 瑕疵있는 書類

運送書類의 瑕疵라 함은 信用狀 條件과 一致하지 않거나 또는 矛盾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는 환어음의 부도 또는 運送書類의 受理拒絶의 結果를 招來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환어음 및 運送書類의 매입거래가 信用狀 條件에 일치하고, 또 그 상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매입어음이 發行銀行에 의하여 부도 또는 인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不渡 또는 引受拒絶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계화물의 미도착, 품질상위 또는 서류 불비 등 信用狀條件의 不一致가 유일한 이유가 되겠지만, 수입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수입자의 가격하락 등 수입지의 시황이 좋으면 지급 또는 인수될 것이지만, 수입지의 시황이 악화될 경우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라도 이를 이유로 信用狀 조건의 불일치를 주장하여 부도 또는 인수거절을 하는 등 마케트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매입환어음이 일단 부도 또는 인수거절이 되면 상대가 외국인이므로 국내와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이 상위 또는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쉽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은행으로서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⁸⁷⁾.

書類의 內容을 審査한 결과, 信用狀조건과의 불일치가 있다든가, 서류를 매입·인수 또는 지급한 은행에서 서류를 점검하여 不一致事項을 Covering Letter에 지적하여 온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하자사항을 통지하여 수입업자가 인수할 것을 동의하고, 發行銀行이 위임받고 있는 조건변경사항 범위내인 때는 인수동의서를 청구하고 인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인수할 것을 동의하면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Under Reserve 또는 Against Guarantee에 대한 해제수권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瑕疵있는 運送書類에 대하여 發行依頼人の 引受拒絕時에는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發行依頼人으로부터 그 사유를 정식서면으로 부도통지의뢰서를 제출받아 그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곧 매입은행 앞으로 부도사유를 명시하여 전신 또는 기타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매입은행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반송하든가 發行銀行에서 보관하든가 해야 한다.

UCP 400에서는 매입은행에 대한 통지에 적절한 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UCP 500에서 그 기간을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로 구체화하였다.⁸⁷⁾

매입은행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運送書類 발송요청이 있으면, 寫本을 비치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運送書類原本을 반송 조치한다. 동 반송내용을 매입은행에 통지하며 부도처리한다.⁸⁸⁾

發行銀行이 하자서류를 인수한 경우에 대한 처리는 국가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 美國統一商法典에서는, 하자있는 서류를 發行銀行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자있는 서류를 發行銀行이 인수하였는데, 이

87) 李勝榮, 前掲書, p. 462.

88) UCP 500, 제14조 C 항 참조.

89) 李勝榮, 前掲書, pp. 474-475.

에 대해 發行依頼人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發行銀行이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⁹⁰⁾

獨逸에서는, 發行銀行은 원칙적으로 하자서류의 인수를 거절한다. 그렇지만 發行銀行은 信用狀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하자서류를 인수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信用狀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서류는 發行銀行이 수익자나 지정은행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發行銀行이 원칙에 반하여 그 서류를 發行依頼人의 동의없이 인수하면 發行銀行은 의무에 반하여 행한 것이 되며, 그 發行銀行 스스로가 信用狀에서 확약한 給與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發行銀行과 發行依頼人간의 청산은 이러한 경우에 이들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사무처리 계약에 따른다.⁹¹⁾

2. 瑕疵의 發生原因

원래 信用狀 去來는 發行銀行의 독립된 지급확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상품의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서류가 信用狀條件과 일치하는한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서류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發行銀行은 마땅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반대로 아무리 서류의 내용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信用狀 條件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信用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⁹²⁾.

90) 장홍순, “화폐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발행은행과 매입당사자간의 책임의 한계” 무역학회지 제18권, 한국무역학회, 1993, p. 430.

91) 獨逸民法 第631條, 第675條, 장홍순, 전개논문, p. 431에서 재인용.

92) 李勝榮, 前掲書, pp. 462-463 : 부도의 사유가 되는 일반적인 하자의 유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late shipment (선적기일이 경과한 후에 선적한 경우)
- late presentation (운송서류 제시기일 경과후 제시한 경우)

따라서 매입을 위해 제시한 수출환어음 및 運送書類상에 信用狀條件에 一致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은행은 信用狀의 기능을 보충하는 형태의 제반조치를 해야 한다.

3. 書類의 瑕疵 發生 原因

서류의 하자발생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복잡다단한 무역상태하에서 국가간 상관습의 차이, 무역관리제도와 무역정책의 상이, 그리고 수출품 생산면에서의 제반문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信用狀 自體의 問題로 우리의 외환관리법상의 수출정상 결제방법에 의하면 輸出信用狀은 取消不能信用狀을 요구하므로 取消可能信用狀은 거의 볼 수 없으며 取消不能信用狀인 경우에도 지급약의 불명확한 표현,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수입업자가 지급을 한다면 대금을 송금하는 등 信用狀의 근본적인 성격에 맞지 않는 문언이나 Freight가 후급조건임에도 불구하고 CIF가격조건으로 표시되는 등 실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나 단순한 誤字가 아닌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거래에 응해서는 안된다.

船積書類가 信用狀條件과 不一致하는 경우로 信用狀에는 어음발행의 요건에서 부터 소요선적서류의 종류·필요한 각통수·상품명 등이 名記되어 있는데 이에 일

-
-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금지조건임에도 분할선적을 한 경우)
 - transhipment (환적 금지조건임에도 환적을 한 경우)
 - different shipping line (선편 또는 항로가 상이한 경우)
 - different discharging port (화물의 양륙항이 상이한 경우)
 - early shipment (최초 선적토록 된 일자이전에 선적한 경우)
 - lack of documents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불비된 경우)
 - different commodity descriptions (상품의 명세가 상이한 경우)
 - overdraw (신용장잔액 또는 상품송장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 발행시)
 - different or lack of countersignature (서명이 다르거나 누락한 경우)
 - irregular instalement (할부선적조건대로 선적하지 않는 경우)

치하지 않는 경우이다⁹³⁾).

선적서류의 내용 및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로 은행은 제출된 선적서류에 관하여 표면적으로 그것이 정당한가 어떤가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재내용 등이 발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충분히 체크할 의무가 있다는 뜻도 된다. 예컨대 상업송장 중의 수량·단가·합계금액의 계산내용이 하자가 있다든가 중량용적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중량·용적의 상위 등 표면상의 하자는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4. 瑕疵에 대한 貿易業者의 處理方法

(1) 瑕疵의 處理方法

하자에는 그 내용에 따라 輸出地에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어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에서 나타나는 하자는 수출업자즉 매입신청인이나 서류발행기관이 정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錯誤가 아닌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경중, 채권보전, 거래실적 또는 신용도에 따라서 信用狀조건변경후 매입, 추심, 전신조회 매입, 보증부매입 등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처리한다.

(2) 輸出地에서 訂正이 가능한 瑕疵에 대한 措置

수출지에서 수출업자 즉 매입신청인이나 서류발급기관이 정정할 수 있는 하자는 정정하도록 한다. 정정가능한 서류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어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기타 서류를 들 수 있으며 단순한 착오가 아닌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으면 보증부매입, 전신조회매입, 추심, 信用狀의 條件變更후 買入등의 방법

93) UCP 500 제14조

을 택하여 처리한다⁹⁴⁾.

(3) 訂正이 不可能한 瑕疵에 대한 取扱方法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입신청인의 거래실적, 신용도, 채권보존 및 하자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그러한 하자사실이 있는 서류가 전에 결제 되었는가, 매입신청인이 과거에 부도를 자주 당하지 않았는가, 수출지역이 부도가 빈번한 지역이 아닌가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은행 및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보증부 매입, 發行銀行앞 전신조회후 매입방법, 信用狀 조건변경후 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保證附 買入(Letter of Guarantee (L/G) Negotiation)이란 運送書類의 하자로 인하여 매입어음이 부도 반환되어 오는 경우 매입은행에 무조건 매입대전의 元利金⁹⁵⁾을 상환하겠다는 요지의 수익자의 각서를 청구하고 매입에 응하는 방법이다. 이는 發行銀行의 지급확약 대신 수익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여신이다. 만일 매입금액이 거액이거나 하자내용이 중대하고, 기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용있는 거래처의 연대보증서, 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청구하거나 또는 부동산등의 담보를 취득한 후 매입에 응한다⁹⁶⁾.

發行銀行앞 電信照會 후 買入하는 방법은 發行銀行에 전신으로 서류의 하자내용을 지적하고 매입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승인을 얻은 후 매입하는 것이다⁹⁷⁾. 이때의 제 전신비용은 매입의뢰인의 부담이다. 發行銀行의 조회결과 매입해도 좋다는 회신이 있으면 信用狀의 보증, 즉 信用狀條件 변경효력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94) 梁暎煥外 2人, 前掲書, p.298.

95) 원금 = 부도외환총액 x 회수시 T/T selling rate,
이자 = 원금 x 외환여신 연체비율 x 매입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일수 ÷ 360 - 매입당시
징수 환가료.

96) 梁暎煥 外2人, 前掲書 p.298.

97) 上掲書, p.298.

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推尋方式으로 買入하는 方法은 하자가 중대하고 담보가 미약하여 부도될 경우 채권보전이 우려될 때에는 추심처리하여 대금이 입금된 후 처리하는 방법이다⁹⁸⁾. 이는 信用狀의 효용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信用狀의 진정성이나 發行銀行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 부도가 확실시 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신용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信用狀 條件變更 후 買入을 하는 방법은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發行 依頼人에게 연락하여 信用狀의 조건변경을 한 후 매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⁹⁹⁾.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條件變更事項은 信用狀金額의 증감, 信用狀 期限의 연장, 換積 및 분할선적의 허용,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등인데 이들은 바로 선적서류의 하자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다.

第 3節 書類一致의 限界성과 處理

1. 書類不一致 判定基準

(1) 眞偽性

은행은 통지하는 信用狀 문면상의 眞正性を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發行銀行과 換去來契約이 되지 않고 署名鑑이나 테스트키등이 교환되어 있지 않아 信用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단순히 참고자료를 수익자에게 信用狀을 통지할 때 문제가 된다. 특히 電信으로 도착한 信用狀일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信用狀自體에 대한 信賴性は 더욱 문제된다. 실제 통지은행으로부터 信用狀을 수령한 수익자 자신도 信用狀 자체

98) 上掲書, 同面.

99) 上掲書, 同面.

의 진위성이나 發行銀行의 대외적 신뢰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信用狀條件이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상태로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¹⁰⁰⁾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發行銀行으로부터 거절될 수도 있고 信用狀 자체가 사기라면 수익자와 은행간에 지급이행이나 대금상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을 경우 은행은 독립·추상성의 원칙관행에 따라 서류의 문면만을 점검하여 지급이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기서류라는 것을 안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買入信用狀에 근거하여 환수출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선의의 어음 소지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기서류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결국은 發行銀行의 대금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發行依頼人이 선의의 손실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고, 發行依頼人에 대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야기될 때에는 發行銀行은 매입은행측의 중과실 등의 歸責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의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다.

(2) 原本書類와 署名方法

EDIFACT체제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국내외적으로 전자자료 교환이 증가됨에 따라 사진복사, 자동 또는 컴퓨터시스템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유통시켜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서류들에 대한 UCP 400에서는 원본이라고 표기한 경우에만 원본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⁰¹⁾, UCP 500에서는 원본이라는 표기 이외에도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원본으로 수리한다고 제한하고 있다.¹⁰²⁾ 그리고

100) UCP 500 제14조

101) UCP 400 제22조 b항

102) UCP 500 제20조 b항 :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원본서류의 범위와 서명요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信用狀 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서류가 첫째, 복사기기, 전산기계 또는 탄소복사지에 의하여 작성되고 둘째, 원본이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이 되어 있는 한 이를 원본서류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명이라는 것은 肉筆, 팩시밀리, 打印, 기타 기계방식이나 전자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작성된 모든 서명을 의미한다. 특히 UCP 500에서는 서명에 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가능한 여러 형태의 무역거래 그리고 법률적 또는 공적인 서명을 포괄할 수 있게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채권행사를 위해 원본서류의 제시가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보험증권 등인데 이러한 서류는 발행자 자신이 자기방어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표시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3) 複寫書類의 提示方法

UCP 500 제22조 C항은 이번 개정때 신설된 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복사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원본이란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서류는 모두 寫本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때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치 않다.¹⁰³⁾ 아울러 信用狀에 2통 이상의 사본서류가 요구된 경우, 서류는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 ¹⁰⁴⁾ 다만 서류자체에는 2통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등의 별도의 명시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사본에 대한 의미, 그리고 2통, 3통 등과 같이 수통의 서류를 요구할 때 원본과 사본의 통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항에 규정된 것이다.¹⁰⁵⁾

103) UCP 500 제20조 c항 i.: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었거나 또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이를 사본으로서 수리하여야 한다-이 때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치 않다.

104) UCP 500 제20조 c항 ii.

그러나 서류자체에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된 原本의 全通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서류의 심사자들에게는 明瞭性을 제시하고 銀行標準慣習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4) 證明書類의 樹立方法

UCP 500 제20조 d항도 신설된 것으로 이에 따르면 信用狀의 인증, 확인, 공인, 사증 또는 설명된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書類上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서명, 표식, 打印 또는 附箋이 있어야 한다. UCP 500에서 서류의 인증¹⁰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서류의 심사자들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장차 국제적으로 통일된 은행표준관습을 형성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 동안 信用狀 거래의 당사자들간에는 서류의 인증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현행 개정규칙에서 규정한 인증의 방법들은 오직 서면상의 표시에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인증되기 위해서는 그 서류상에 반드시 인증, 확인, 공인, 사증 또는 증명되었다는 서명, 표식, 打印 또는 附箋이 있어야 한다.

2. 書類一致의 限界性

書類審査라 함은 수익자가 상품을 적재하고 이를 설명하는 선적서류, 보험서류, 운송 등 제반서류에 대하여 은행이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가를 대조·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은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원칙에 따

105) ICC Documentary, 470/ Int. 258.

106) ICC, UCP 300/400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op. cit.*, p. 41.

어느 메세지(message)가 발신자로부터 온 것임을 그 메세지의 수신자에게 확신시키게 하는 물리적, 전자적 기타의 방법에 의해 메세지에 표시하는 것이고, 서명에 사용된 사람의 이름 또는 頭文字 또는 기호와 같은 서명의 제한적 정의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라서 점검함으로써 서류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信用狀은 문면상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發行銀行의 條件附 確約¹⁰⁷⁾이므로 계약상품의 인도를 설명하는 제반서류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은행은 信用狀에 명시된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하였다면 은행자신의 책임이 되어 지급한 대금을 상환청구권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하여 상업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⁸⁾ 따라서 모든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信用狀 條件과 文面上으로 嚴密히 一致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UCP 400에서는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며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일치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¹⁰⁹⁾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 및 문면상 일치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UCP 500에서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결정할 것을 신설하고 있다.¹¹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銀行標準慣習의 慣行에 따라 文面上 一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밀히 일치하느냐는 실로 난해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해야 하지만¹¹¹⁾ 단어나 글자 하나

107) Ventris, F.M. *op. cit.*, p.1.

108) Schmitthoff, C.M., *op. cit.*, p.218.

109) UCP 400 제15조 :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모든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문면상 상호모순이 되는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10) UCP 500 제13조 a항: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의 재조건과의 일치성은,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11)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選造解説とその問題點-(上), 外國爲又貿易研究會, 1977, p.355 : 제시된 서류를 심사할 때는 적어도 다음 내용은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까지 서류와 信用狀條件과 一致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嚴格一致의 原則에서는 표면상 發行依頼人을 저해하지 않고 사법부의 합리성 평등, 선의에 대한 해석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오차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엄밀 일치주의와 관련하여 수많은 소송과 분쟁이 야기되어 왔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각종 運送書類의 審査에서 방어적인 信用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배상금이나 준비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지급회피도 점증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류심사 담당자들은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결국 본질적인 은행거래에서 건전한 은행이 공정성을 무시하여 信用狀 去來를 저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은행표준관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UCP 500에서는 銀行의 書類審査 責任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信用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는 은행이 심사하지 아니한다. 만약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은행은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하거나 또한 이를 아무런 책임없이 그대로 송부하여야 한다.¹¹²⁾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신설은 서류상 입증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점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信用狀에 규정하지 않은 서류가 명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실무상 어려움은 능히 예상된다. 다만 信用狀 發行 이후 매매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합의된대로 서류가 추가된다면 당연히 변경사유 통지에 의해 위 조항에 부합되게 信用狀 업무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든지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의 통지없이 서류가 제시된다면 오히려 信用狀 去來를 연체시키거나 분쟁이 야기될

①서류의 유효기간 ②제시된 서류의 신용장에서의 요구서류 ③어음금액, 송장금액, 신용장 금액간의 모순 ④단가, 상품의 명세 및 수량등의 기재사항 ⑤보험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와 담보의 범위 ⑥선화증권상의 일자, 사고여부, 배서, 운임 지급여부, 분할선적이나 환적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 ⑦각 서류 상호간의 관련성.

112) UCP 500 제13조 a항

것이다.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서류가 제출되어 심사상의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은행은 수익자에게 무조건 반송하기에 앞서 수출입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하여 심사기준에 상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수리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UCP 500에서 書類審査의 基準으로 銀行標準慣習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信用狀이나 첨가서류의 전송에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電子方式이 導入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전자문서는 1987년에 설계된 EDIFACT¹¹³⁾ 라는 국제표준으로 통일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유엔산하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기구의 취지에 따라 한국 EDIFACT위원회를¹¹⁴⁾ 구성하여 EDIFACT의 표준화 작업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
- 113) 曹乘仲, 제5차개정 화폐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무역대리점, 1992:
 EDIFACTE(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행정, 상역 및 운송분야 관련 전자자료교환) UN/EDIFACT는 외환, 금융, 항공 및 해상운송, 보험, 관세 및 상역 행정 등 각 분야에서 EDI에 관한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엔무역 데이터 교환 지침서(UN Trade Data Interchange Directory:UNTDID)전자문서 구문규칙(Syntax Rules, ISO 9735), 표준전자문서집 (Message Directory), 표준전송 항목집(Segment Directory), 복합데이터 항목집(Composite Data Element Directory), 전자문서 설계 지침서(Message Directory), 전자문서 구문 지침서(Syntax Implementation Guidelines), 무역데이터의 전송교환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e by Teletransmission).
 2. 유엔 무역데이터 항목집(UNTDID, ISO 7372)
 3. 전자문서 실행지침서 (Message Implementation Guidelines)
- 114) 曹乘仲, 前掲 論文 ;
 -Korea EDIFACT Committee: KEC. 이 위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자동화 관련 국제표준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 해상, 육상, 보험부분은 그 구성이 완료되었고 통관, 외환, 금융, 유통, 제조 부문 등도 구성이 될 예정이다. KEC는 국내표준전자문서(Korean Standard Messages:KSM)에 개발참여 및 국내보급 등을 목적으로 그 활동이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자동화 사업을 위해 199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EDIFACT의 일환으로 자동화사업의 운영주체인 한국무역통신(주)를 1992년 3월 설립하였다.
 -서류없는 무역시대가 열림에 따라 기업간의 각종 상거래 서식과 수출입 관련 행정서식들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처리하면 현재 20일이상 소요되던 무역업무 처리기간이 4-7일로 단축되고 무역절차 관련비용이 20%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까지 종합무역자동화 사업이 완성되면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항만, 보험회사나 선박회사간을 오가던 수 많은 서류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不一致書類의 處理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信用狀의 條件과 一致하는지, 어긋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發行銀行 및 確認銀行은 그 판단의 자료로써 제시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¹¹⁵⁾ 이러한 결정여부는 의뢰인이 지급불능이라든지 매매계약상의 이유 등 서류이외의 사유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發行銀行은 條件不一致書類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조건 인수하든지 지급을 거절하든지 양자를 택하여야 한다.¹¹⁶⁾ 만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와 처리지침을 서류송부 은행이나 수출상에게 연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는 등 發行銀行側의 클레임 처리절차를 UCP에 규정하고 있다.

UCP 40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만일 發行銀行이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 條件과 不一致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지침 즉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그냥 수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클레임 제기시의 처리절차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서류를 인수하도록 授權된 銀行 또는 發行銀行은 文面上 信用狀의 條件과 一致하는지 여부를 서류 자체만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UCP 400이나 UCP 500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서류가 불일치하다고 결정할 때의 처리방안이다. 發行銀行이 해당서류가 信用狀과 不一致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UCP 500에서는 發行銀行은 지정된 서류기간내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發行依頼人에게 불일치한 서류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UCP 500 제13조

115) UCP 500 제14조 b항 : 서류를 수령한 당시에 개설은행 및/ 또는 확인은행 (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되었는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16) ICC 日本國內委員會, 朝岡良平 監修, 實務家のための 選造解説 信用狀 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p.163.

b항의117)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신설하고 있다.118)

受益者에 대한 銀行責任의 獨立性 및 不一致에 대한 發行依賴人과의 교섭을 조화시켜야 하는 난제는 개정규칙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결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고객과의 교섭이 정당해질 것이다. 書類不一致의 판단은 은행자신이 해야하고, 發行依賴人의 양해로 서류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역시 은행 단독으로 發行依賴人과의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불일치한 서류를 수락하도록 교섭함은 이같은 관행이 信用狀상의 약속에 대한 성실성 및 독립성과 상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섭에 필요한 기간은 서류의 심사·發行依賴人과의 교섭 및 인수거절통지까지 7일 이내에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기간은 은행은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 및/또는 發行銀行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UCP 400에서는 지체없이 전신으로 또는 전신이 불가능하다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UCP 500 제13조 b항과 일치하여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하였다. 이같은 개정은 합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반영하고 있다.

117) UCP 500 제13조 b항 : 서류를 송부해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 영업일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118) UCP 500 제14조 c항 : 서류가 문면상 信用狀의 제조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독자적인 판단으로 發行依賴人과 그 하자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제13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

第 5 章 結 論

世界貿易의 發達과 더불어 運送技術 및 情報通信技術도 變革을 초래하여 貿易 慣習이 바뀌게 되었고 UCP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제5차에 걸쳐 UCP을 개정하였다. UCP는 현재 거의 전세계가 수용하고 있고 慣習法的인 존재로 인정되어 信用狀業務의 실재를 지배하고 있다.

信用狀去來를 하는 당사자는 UCP를 채택한다는 합의로 信用狀去來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信用狀 去來 당사자간에는 끊임없는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法과 制度가 완전할 수도 없지만 UCP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해석상 誤診外 權利濫用 및 不法行爲로 인한 善意의 被害를 당할 위험은 특히 상 관습이 다른 국가간에 상존하게 마련이다.

UCP 500은 어느때의 개정보다 운송방식에 따를 다양한 運送書類에 대한 規定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運送書類로 기인하는 紛爭을 최소화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다.

信用狀發行에 의거 發行銀行은 UCP에 명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支給, 延支給, 引受, 買入을 確약한다. 그러나 UCP에는 지급의 본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견해가 각기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급의 본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채로 지급을 이행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支給에 관한 當事者間의 見解가 다른 경우 기업의 資金計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P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나 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UCP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번 UCP의 개정을 기회로 하여 그동안 기업이나 은행이 信用狀에 관한 견해나 경험 등을 公開하여 情報를 共有함으로써 UCP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UCP이 모든 信用狀 去來에 최우선하는 규범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信用狀의 해석원칙은 特約優先의 原則에 따라 信用狀 去來에는 信用狀의 본문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본문상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UCP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UCP 500에서 보완된 것중 銀行의 運送書類에 대한 銀行의 書類審査基準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信用狀去來의 特性은 먼저 信用狀 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書類에 의한 거래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書類가 信用狀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같으면 發行銀行은 發行依頼人에게 문의할 필요도 없이 지급할 수 있고 또 書類의 形式的 즉 文面上 調査義務만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賣買契約을 근거로 信用狀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으로부터 獨立된 特性을 갖고 있다. 물론 이 특성은 신용자 당사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商去來側面에서 보면 매매 당사자들간에는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 즉 不誠實한 賣渡人이 瑕疵商品을 船積하고 서류만 信用狀 조건에 일치하는 것을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고 또 성실하게 계약에 맞는 상품을 선적한 후에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때문에 결제를 못받는 수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와 같이 매매 쌍방은 契約違反에 대하여 信用狀 去來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信用狀이 그 獨立抽象性에 의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貿易業者는 信用狀上에 품질검사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만약 선적되는 상품을 확인하거나 선적상

품의 진위여부를 확인 증명할 수 있을 때는 매매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둘째, 信用狀은 條件附 支給保證書이기 때문에 信用狀 發行時 賣渡人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發行銀行이 發行依頼人의 입장만 생각하고 信用狀去來를 惡用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發行依頼人은 부당한 지시나 불명확한 지시를 하지 말고 UCP에 의거 간단, 명료한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행의 信用狀通知에 있어서 信用狀原本을 受益者에게 전달함으로써 偽造 또는 變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내도된 信用狀의 眞偽確認에 있어서도 그 확인체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偽造信用狀이 통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信用狀은 어느 누구를 위한 支給約束手段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賣渡人은 마치 信用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買受人에 대한 사전의 信用調査가 미흡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매매당사자들끼리 공모하여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信用狀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무역사기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매매당사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銀行의 免責에 있어서 너무 은행측면만 고려 하다보니 매매 당사자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불가항력에 의한 은행의 휴무기간중에 信用狀의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것에 대하여 경과조치없이 인수·지급 또는 매입을 하지 않기로 한 UCP는 선의의 매매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貿易去來當事者들도 UCP의 규정상에 있어서 미비점 내지는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信用狀의 發行이나 運送書類를 제시할 때 信用狀上에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하고, 요구서류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를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발생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모든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信用狀 조건과 문면상으로 엄밀히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개설된 信用狀의 제조건과 제출서류가 불일치하여 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는 무역거래를 저해하게 된다. 더우기 상호불신이 쌓이게 되어 법적 분쟁까지도 이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서 많은 손실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와 관련한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의 신용을 근거로 開設된 信用狀이 輸出入 當事者間의 원활한 대금결제 수단으로 정착하여 무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信用狀去來에 따른 銀行의 運送書類 受理基準은 UCP를 근간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貿易業者는 최대한 노력하여 UCP조항에 一致되는 書類를 구비하여 信用狀去來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Bank's Documents Inspection in Transaction with Documentary credits

Kim, Sung- Gil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global trade transactions of today have been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has become active, the use of L/C (Letter of Credit), the core of trade transactions, has a tendency to increase day by day. This trade transactions, by means of L/C is the material evidence accounting for the transportation of goods, the object of transportation, and is characterized by the performance of the payment of charges, the final aim of trade transactions of all the documents as well as the transport documents to the bank.

But, as trad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between traders in countries where language, custom, law and the economic system are different and the concluding and performing Places of the contract and the payment place of charges diff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dispute may take place between trade partners. In particular, in case the documents that the beneficiary or designating bank has sent to the issuing bank have any defect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C, the issuing bank may refuse the payment of charges through its voluntary judgement, but, in most cases, comes to refer to the applicant for the issuance of L/C and comply with his instructions.

The payment of char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by means of L/C is made by concluding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premised on the provision of the documents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C. The accept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standing for the object of trade transactions intended for the interest from security on the conclusion of this documentary L/C mostly,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al principl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C based o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ccordingly,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and master the meanings of the regulation on documents stipulated i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And, the documents accepted at the bank must not only correspon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C on the face of the document but have consistency without any conflict between documents. Therefore, the bank come to be responsible for screening whether the documents submitted are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C on the face of the document.

Therefore, if the bank has paid for charges in exchange with the documents in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documents of L/C, from the beneficiary's perspective, without presenting the documents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in L/C, it comes to bear a responsibility for it, comes to lose a recourse to charges paid, and must bear all commercial risks incurred due to it.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the bank to understand the standard and requirement for the screening of the transport documents and find out it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for the trader to

find out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

This thesis made an inquiry into the standard for the acceptance by the bank of the transport documents in the 5th amended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with priority given to the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and also the trader's corresponding countermeasure in view of the bank's standard for the screening of the documents and its escape clause due to it. In addition, in case the bank has accepted the transport documents according to the acceptance condition of the bank on the transaction of L/C, there are problems that may occur in each transport docu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attempt to enable the trader to engage in a smooth trade activity through the transaction of L/C by having a good grasp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accept the transport documen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thesis made a theoretical inquiry into the transactional matters of the L/C relating the transport documents with the sale contract and the payment of charges in the transaction of L/C in chapter 3, and studied the bank, standard and requirement for the acceptance and screening of the transport documents with focus on the 5th UCP in chapter 3. And chapter 4 suggested the plan that the trade can dispose of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of the bank with priority given to the documents and elicited and suggested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on its basis in chapter 5.

An attempt is made to summarize the result of reviewing the bank's standard for the screening of the document concerning the transport document of the bank, of those matters supplemented in the UCP 500 and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 :

Firstly,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transaction of L/C is characterized by the transaction by means of the documents, not the transaction of goods.

That is, there is only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documents formally, namely, on the face of the document.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transaction of L/C is that it has a feature that it is independent of the sale contract though the letter of credit has been opened on the basis of the sales contract.

But it may do harm to the parties to a sale each other from a perspective of commercial transactions. That is the dishonest seller may be paid charges for goods by shipping the defective goods and presenting only the transport documents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nd there may occur the case that the seller may not be paid charges for goods on account of the slight defects of the documents after the goods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were shipped in good faith.

Parties to a sale hope that the infringement on the sales contract will be resolved in the transaction of the L/C, but the fact is that the letter of credit does not play any role because of its independent abstraction. Accordingly, the trader should make practical use of the method to attach the 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 to the letter of credit.

Secondly, because the letter of credit is the conditional payment guarantee, the bank, in many cases, presents the terms and conditions difficult to conform to in opening the L/C.

Then, this lays the foundation for making bad use of the transaction of the L/C, thinking of the applicant alone.

Consequently, the applicant does not give unfair or unclear instructions and will have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and confusion in advance by using clear phrases.

Thirdly, because the bank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falsification or alteration by transmitting the original of the L/C to the beneficiary or the confirmation system is not perfect in confirming whether the L/C is true or

false, there may be a possibility that the false L/C is transacted .

Fourthly, though the letter of credit may not become the means for a promise to pay for someone, the seller tends to misunderstand the L/C as if it could resolve everything in many cases.

As a result, the prior credit analysis of the seller may be poorly carried out.

And, the trade fraudulence may take place that simulate the transaction of the normal L/C as the parties to a sale conclude the false sales contract through their conspiracy. Accordingly, the bank must need a sufficient credit analysis of parties to a sale in advance.

Fifthly, there may arise the case that the parties to a sale unreasonably suffer damage for the bank side is excessively considered in the exemption of the bank. For example, the UCP requiring that any acceptance, payment and purchase not be carried out without interim measures, in case that the effective date of the L/C have been expired during the period of the bank's temporary closure of business due to force majeure, may do enormous damage to the parties to a sale in good will.

Therefor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parties to a sale is necessary.

Sixthly, the parties to the trade transaction should make an effort to get rid of the foundation for the dispute, in advance, that may arise from defects or uncertainties in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UCP. They have to endeavor to proceed to wipe out the elements that may enable any dispute to occur in advance by giving clear instruction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C and making a clear agreement of required documents. Accordingly, if the importer comes to institute a claim to the exporter a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pened L/C is not consistent with the submitted documents, it may come to impair the trade dealings. Furthermore, if it allows the mutual

distrust to accumulate and thus gives cause to the event amounting to the legal dispute between both parties, it comes to bring about many losses economically to the parties to a sale. Consequently, an effort will have to be made so that the L/C opened, based on the reciprocal credit between parties to a sale through the prior prevention of claims related to the L/C transaction, may take root deeply as the means for the smooth payment of charges between parties to the export and import trade and activate the trade dealings.

At Length, the bank's criterion for the accept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in the L/C transaction should be judged on a basis of UCP. The trade will have to endeavor not to suffer from disadvantages in the L/C transaction by having the required document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UCP.

參 考 文 獻

- 강신태, 社會科學研究的 論理, 博英社, 1983.
- 姜元辰, 信用狀論, 博英社, 1994.
- 김광응, 社會科學研究方法論, 博英社, 1982.
- 金容福, 信用狀論, 博英社 1994.
- _____, 貿易實務, 博英社, 1994.
- 朴大衛, 信用狀, 法文社, 1994.
- 梁暎煥·吳元奭, 貿易實務論, 法文社, 1994.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4.
- 李時煥, 新貿易實務講義, 新陽社, 1994.
- 李勝榮, 貿易決濟論, 法文社, 1990.
- _____, 信用狀論, 法文社, 1994.
- 崔鳳赫, 編著, 信用狀統一規則, 國際貿易研究院, 1993.
- _____, 第5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 解說集, 國際貿易研究院, 1993.
- 大韓商工會議所, 第5次改正 貨幣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 1993. 6.
- 大韓商事仲裁院, 信用狀 去來시 UNPAID의 豫防과 解決策 ,1991.
- 강호경,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不適格 書類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紙 제18권,
韓國貿易學會, 1993.
- 姜元辰, “제5차 信用狀統一規則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제8권, 韓國國際商學
會, 1993. 11.
- 고중현, “保證信用狀에 있어 支給拒絶 基準設定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제8권,

- 韓國國際商學會, 1993. 11.
- 김종철, “信用狀 統一規則에 관한 ICC의 有權解釋”,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 남풍우, “信用狀 및 書類運送에 있어서 기재물품의 技術에 관한 研究” 論文集,
江南大學校, 1993.
- 노현수, 信用狀去來의 特性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문철한, “支給·引導·買入信用狀의 特性 및 使用方式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紙
제18권, 韓國貿易學會, 1993.
- 배용원, “信用狀去來에 있어서의 書類點檢義務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
院, 博士學位論文, 1986.
- 徐正斗, “信用狀去來의 諸條件의 解析에 관한 比較分析”,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 吳元爽, “海上貨物信用狀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國際商學 제8권, 韓國國際商
學會, 1993. 11.
- 윤형석, 信用狀에 관련된 法律問題-信用狀 統一規則 5차 改正案 主內容-,
銀行界, 1993. 3월호-1993. 8월호.
- 이대우, “貨幣信用狀의 獨立 抽象性 原則과 Fraud Rule適用의 限界”, 韓國金融
研修院, 1993. 10.
- 이대익,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國內銀行의 實務慣行에 대한 考察” 國際商學
제8권, 韓國國際商學會, 1993. 11.
- 이봉조, “Development in the letter of credit law with regard to the e

- xamination and rejection of documents by banks”, 貿易學會誌, 韓國貿易協會 제15권, 1990.
- 임영세, “讓渡可能信用狀下에서 關係當事者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제8권, 韓國國際商學會, 1993. 11.
- 장홍훈, “信用狀去來에서 韓國의 發行銀行의 權利 義務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제8권, 韓國國際商學會, 1993. 11.
- _____, “貨幣信用狀去來에 있어서 發行銀行과 買入當事者間의 責任의 限界” 貿易學會誌 제18권, 韓國貿易學會, 1993.
- 曹秉仲, “第5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上 受理되는 運送書類의 要件에 관한 考察”,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93. 9.
- _____, 第5次 改正 貨幣信用狀 統一規則의 改正試案에 관한 檢討, 貿易代理店, 1992.
- 채 훈, “商業信用狀의 去來慣習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崔鳳赫,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支給銀行의 本質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6
- _____, “信用狀統一規則 第5次 改正(案) 解說”,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93.3
- _____, “信用狀統一規則 第5次 改正案에 따른 支給의 本質에 관한 考察” 貿易學會誌 제18권, 韓國貿易學會, 1993.
- 최정호, “信用狀去來에 의한 貸金決濟 方式의 再認識” 貿易學會誌 제18권, 韓國貿易學會, 1993.
- 홍종덕, “信用狀去來시 Unpaid의 豫防과 解決策(상),” 仲裁 제197호, 大韓商事仲裁院, 1988.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遂造解説とその問題點-(上), 外國爲又貿易研究會, 1977.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東京, 有斐閣, 1962.

金融財政事情研究會, 朝岡良平 監修, 「實務家のため の遂造解説 信用狀 統一規則, ICC 日本國內委員會, 1985.

Barnard S. Whebal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1989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Paris, 1991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rren Gorham & Lamont, New York, 1991.

Emmelhainz Margaret A., *EDI A Total Management Guid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3.

Gutteridge. H. C.,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Jan Rambu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Publishing SA., Paris, 1991

Kozolchyk Boris,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and Related Documentsn of Titl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Duke University, Summer, 1992.

Schmitthoff Clive M, *Schmitthoff's Export Trade*, Steven Sons, 7th., 1980.

Ventris F. 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London, 1990.

Walker. A. G., *Export Practice and Documentation*, 2nd ed, Nawnes Betterworths, 1977.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Paris, 1991.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 ICC Publication No. 434, Sept. 1987.